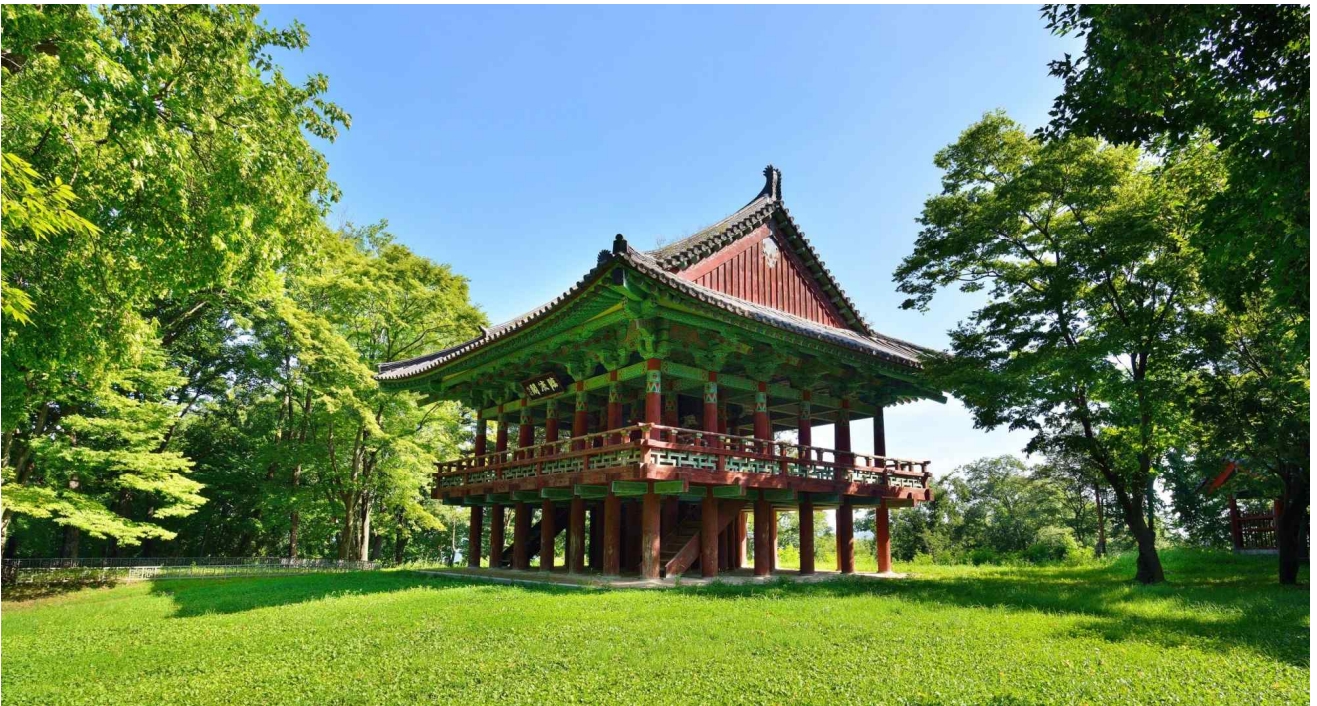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88호 2026. 8. 3.(월)

https://www.gongju.go.kr/prog/eBook/EBKR_01/kr/sub04_06/list.do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규 칙】

제701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

【공 고】

제2026-2083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26-2088호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
제2026-2108호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20
제2026-2148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34
제2026-2150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37
제2026-216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	45
제2026-2173호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53
제2026-2187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3
제2026-2193호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67
제2026-2200호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76

【고 시】

제2026-14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82
제2026-142호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고시	83
제2026-143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86
제2026-146호 1967 호서극장 관람료 고시	90
제2026-14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1
제2026-148호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97
제2026-15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01
제2026-1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2
제2026-15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공주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30

2026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2026. 7. 3.)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6년 8월 3일

공주시 규칙 제701호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나.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다. 학계·전문기관·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제2항제5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명예시장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시장 임기 변경 (1년→2년) (안 제4조 제1항)

- (현행)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개정) 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부칙으로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재임 중인 명예시장에게도 개정된 임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현 문형진 명예시장 임기 : 2년 적용)

□ 조문 내 오류 명칭 정비 (안 제4조 제2항 단서)

- (현행)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
- (개정) **명예 읍·면·동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

⇒ 원래 ‘명예 읍면동장’에 관한 규정이나, 조문 내에 ‘명예시장’으로 잘못 표기 정비

□ 띄어쓰기 수정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 (현행)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개정)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잘못된 띄어쓰기 수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3. ~ 2026. 8. 24.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시정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204 /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taeran1985@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시정팀(☎ 041-840-2204)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taeran1985@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제 할”을 “해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명예시장”을 “명예 읍·면·동장”으로, “해제 할”을 “해제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시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명예시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등) 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u>해제</u>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 ① ----- --- <u>2년</u> ----- ---. ----- ----- ----- ----- ----- ----- ----- <u>해제</u> 할 -----.
②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시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u>명예시장</u> 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위촉 <u>해제</u> 할 수 있다.	② ----- -----. ----- ----- ----- <u>명예 읍·면·동장</u> ----- ----- ----- ----- <u>해제</u> 할 -----.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적극행정 관련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적극행정 사후 추인 등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6조)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정비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한 위원회 연임 규정 정비 (안 제8조)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절차 및 권한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적극행정 포상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22. ~ 2026. 8. 11.[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감사실(의회법무규제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기획감사실 (우편번호 32552)
- 이메일 : ghghskawk123@korea.kr
- 전 화 : 041-840-2044 / FAX : 041-840-370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의 건

입법예고(안)	의 건(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 041-840-2044)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3705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전담부서의 지정)”을 “(전담부서 지정

등)”으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영 제6조”로, “책임관으로 한다”를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제1호 중 “법 제75조의2제2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및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4호 중 “제7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중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적극행정 포상 등)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u> <u>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 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적극 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 괄·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 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u>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공주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 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 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 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u>제3조(전담부서 지정 등) -----</u> <u>----- 영 제6조</u> <u>-----</u> <u>-----</u> <u>-----</u> <u>-----</u> <u>-----</u>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 (생 략)

<신 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생 략)

제5조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

-----.

1. 영 제10조제1항 -----

2. 영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및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 두 차례만 -----.

② (생 략)

제7조 (생 략)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생 략)

제9조 (생 략)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3항-----

5.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인가·허가·등록·신
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
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에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

제11조 (생 략) <u><신 설></u>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u>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적극행정 포상 등)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	--

공주시 공고 제2026-2108호

「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직 직무분석 및 직제개편 사항 반영 등 정원조정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원경찰법」에 따라 직무 불일치 부서 정원 조정, 현행 법령에 맞추어 오기 법조문 문구 및 서식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직 정원 조정

- 총정원 : 공무원 222명(-)
- 직종별 : 행정사무원 88명(-)
 - 문화유산과 3명 → 4명(증1) / 의회사무국 2명 → 1명(감1)

□ 청원경찰 정원 조정

- 경비청원경찰 : 6명 → 8명(증2)
 - 문화유산과 1명 → 2명(증1) / 건설과 0명 → 1명(증1)
- 단속감시 청원경찰 : 2명 → 0명(감2)
 - 문화유산과 1명 → 0명(감1) / 건설과 1명 → 0명(감1)

□ 직제개편 반영

- 부서 명칭 변경 (여성가족과 → 가족지원과)

□ 오기 법조문 문구 정정 및 별표, 별지 서식 변경 등

- 현행 법률에 맞추어 조문 수정 (안 제36조제2항)
- 현행 법률에 맞추어 서식 수정 (안 별표 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규정 조문과 서식 제목 수정 (안 제52조제2항제1호, 별지 제14호 서식)

3. 행정예고 기간 : 2026. 8. 3.(월) ~ 2026. 8. 24.(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치행정과(교류협력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602
- 이메일 : l7y7w7@korea.kr
- 전 화 : 041-840-2254 / FAX : 041-840-3707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041-840-22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별지14호의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사직원을”을 “퇴직원을”로, “사직원에”를 “퇴직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직원”을 각각 “퇴직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의 정원표(제5조 관련)

1. 공무직 정원(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제외)

(단위: 명)

소속부서	계	단순노무원	행정사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비 고
계	222	54	88	11	69	
본청	152	43	53	11	45	
기획감사실	1		1			
홍보미디어실	1		1			
자치행정과	2		2			
회계과	5	4	1			
세무과	1		1			
민원토지과	2		2			
경제과	2		2			
문화예술과	1		1			
관광과	5		5			
문화유산과	6	2	4			
휴양공원과	2		2			
환경보호과	1		1			
자원순환과	49	4			45	
교육체육과	1	1				
평생학습과	10		10			
복지정책과	8	2	6			
경로장애인과	8	6	2			
가족지원과	10		10			
교통과	3	2	1			
도로과	14	3		11		
상하수도과	20	19	1			
의회사무국	1		1			
직속기관	45	11	34			
농업기술센터	12	11	1			
보건소	33		33			
읍면동	24				24	
유구읍	4				4	
이인면	2				2	
탄천면	2				2	
계룡면	3				3	
반포면	3				3	
의당면	2				2	
정안면	2				2	
우성면	2				2	
사곡면	2				2	
신흥면	2				2	

2. 청원경찰의 정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명)

소속부서	계	경비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계	9	8	1
본 청	9	8	1
회 계 과	2	2	
민원토지과	1	1	
문화유산과	2	2	
휴양공원과	1		1
교육체육과	1	1	
건 설 과	1	1	
상하수도과	1	1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4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입 영 휴 가	자녀 군입대 시	1

※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정원책정통보서

직 종	
근무내용	
책정인원	
그 밖에 사항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책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 부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
분실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붙임	반명함판 사진 1매
----	------------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휴직원			
소속		직위(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직사유			
휴직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성명, 생년월일 표기		
위 본인은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휴직을 신청합니다. 붙임 : 증명서류 1부.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공주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인사위원회 기능)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주시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 기능) ----- ----- ----- ----- --. ----- 「지방공무원법」 제7조-----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휴직) ① ~ ③ (생략)	제28조(휴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4호의 서식의 휴직원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별지 제14호서식-----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휴일) ① (생략)	제36조(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① (생략)	제52조(퇴직 및 퇴직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

2. 공무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 5. (생략)

제58조(중간정산) 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② -----
-----.

1. -----
퇴직원 -----
-- 퇴직원에 -----

2. -----
----- 퇴직원-----
-----.

----- 퇴직원-----

-----.

3. ~ 5. (현행과 같음)

제58조(중간정산) ①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일 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일(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 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날짜)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일을 평균임금 산 정시점으로 한다.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 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 ----- ----- ----- ----- ----- ----- ----- ----- ----- -----.
--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09-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26. 8. 3. ~ 8. 17. (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도로과,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3.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한 : 2026. 8. 3. ~ 8. 17.(14일간)
 - 나. 제 출 처 : 공람장소
 -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 내용 : 공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 첨부
5. 기타
 - 가. 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공람·공고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다. 관련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 (☎041-840-7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1개소)

가. 도로(1개소)

1) 유구 도시지역(1개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1	5.8 ~9.5	국지 도로	584	중로1-2	녹천리 109-4	일반 도로	-	'77.12.31.	
변경	소로	3	41	5.8 ~9.5	국지 도로	757	중로1-2	녹천리 680-41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41	소로3-41	○ 연장증가 - 연장(L): 584m→757m(증 173m) - 면적(A): 3,739㎡→4,788㎡(증 1,049㎡)	○ 도시계획도로(소로 3-41호선) 연장증가

주 민 의 건 제 출 서

건	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위	치	유구읍 녹천리			
의 제 출 자	견 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참고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출시 해당 부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공주시 웅진동 260-3번지 일원의『공주시민운동장 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주차장, 도로, 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I.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사항

구 분	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사항
운동시설	◦주경기장 : 49,359㎡ (변경없음)
	◦실내체육관 : 11,381㎡ (변경없음)
	◦암벽등반경기장 : 6,046㎡ (변경없음)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 5,647㎡ → 4,856㎡
	◦풋살장 : 5,840㎡ → 6,715㎡
공공시설	◦도로 및 주차장 : 17,393㎡ → 17,186㎡
녹지시설	◦녹지 : 21,428㎡ → 21,551㎡

2. 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사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BF)기준 반영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3. 체육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 참조

II.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26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칭 : 공주시민운동장 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주차장, 도로, 녹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체육시설(운동장) 전체 면적 : 117,094㎡
- 금회 실시계획인가 면적 : 17,199㎡(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주차장, 도로, 녹지)

구분	합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축면적(㎡)	2,585.10	2,585.10
건축연면적(㎡)	4,178.84	4,178.84

4.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성명 : 공주시장(교육체육과장)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6. 공람기간 : 2026. 08. 03. ~ 2026. 08. 18. (15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조성팀,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08. 18.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 및 교육체육과
(☎041-840-8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체육시설(운동장)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사항
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 번호	세부 시설명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17,094	-	117,094	100.0
운동시설	소 계		78,273	증)84	78,357	66.9
	1	주경기장	49,359	-	49,359	42.2
	2	실내체육관	11,381	-	11,381	9.7
	3	암벽등반경기장	6,046	-	6,046	5.2
	4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5,647	감)791	4,856	4.1
	5	풋살장	5,840	증)875	6,715	5.7
공공시설	-	도로 및 주차장	17,393	감)207	17,186	14.7
녹지시설	-	녹지	21,428	증)123	21,551	18.4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주경기장 (변경없음)

시설물명	면적(㎡)			층수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운 동 장	14,850.00	-	-	-	8레인
축 구 장	8,175.00	-	-	-	-
보조경기장	600.00	-	-	-	6레인
관 람 석	-	2,172.17	6,516.51	3	27,000석
관 리 실	-	180.00	180.00	1	-
화 장 실	-	234.60	234.60	-	6개소
주 차 장	2,141.00	-	-	-	153대

2) 실내체육관 (변경없음)

시설물명	면적(㎡)			층수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경 기 장	1,334.00	-	-	-	-
관 람 석	-	2,965.20	8,895.60	3	3,000석
기 계 실	-	640.75	640.75	1	-
탈 의 실	-	103.24	103.24	1	2개소
화 장 실	-	323.80	323.80	-	11개소
주 차 장	2,003.00	-	-	-	143대

3) 암벽등반경기장 (변경없음)

시설물명	면적(㎡)			층수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암벽등반경기장	462.52	462.52	659.55	4	
관리실, 탈의 및 샤워실, 보일러실, 화장실(1F)	273.00	273.00	268.20	-	
실내리드월, 실내볼더링월, 화장실(2F)			268.20	-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3F)			82.95	-	
계단실(4F)			40.20	-	
볼더링경기장(부대시설)	189.52	189.52	-	-	44.075m×4.3m

4-1) 장애인체육센터 (기정)

시설물명	면적(㎡)			층수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계	2,166.30	2,289.80	4,124.95	2	
용역원실, 기계실, 전기실 등(지하)	2,166.30	2,289.80	731.49	-	
다목적실, 체육관, 수중운동풀 등(1F)			2,166.30	-	
다목적실, 사무실, 화장실 등(2F)			1,227.16	-	

4-2)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변경) - 금회 사업

시설물명	면적(㎡)			층수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계	2,164.77	2,585.10	4,178.84	2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등(지하)	2,164.77	2,585.10	599.17	-	
다목적실, 체육관, 용역원실 등(1F)			2,164.77	-	
다목적실, 사무실, 회의실 등(2F)			1,414.90	-	

5) 풋살장 (변경없음) - 금회 사업

시설물명	면적(㎡)			층수	비 고
	시설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합계	1,176.00	1,193.45	1,176.00	1	
풋살장	1,176.00	1,193.45	1,032.00	-	건축면적은 지붕면적 17.45㎡ 포함
방풍실			23.40	-	
회의실-1			27.00	-	
회의실-2			49.20	-	
화장실			44.40	-	

6) 기반시설 (변경) - 금회 사업 일부 포함

시설물명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 로	4,985	증) 64	5,049	금회 사업 면적 : 623㎡
주 차 장	12,408	증) 271	12,137	금회 사업 면적 : 4,198㎡

7) 도로조서 (변경) - 금회 사업 일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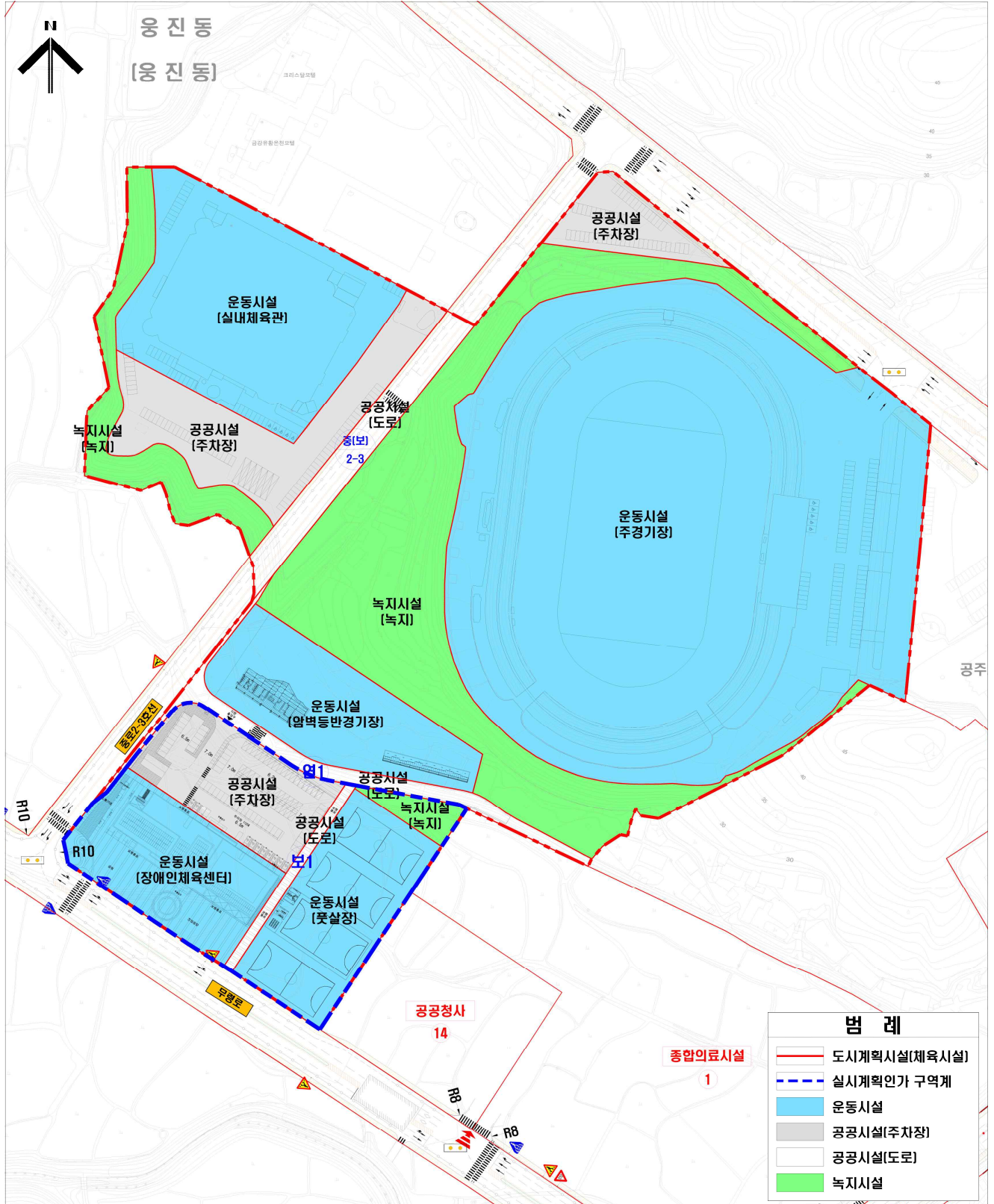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위 치		비고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3	15	448	2,522	보조간선도로	대로3-2	대로3-12	
기정			연2	4.1~7.4	225	1,904	국지도로	중로2-3	웅진동 753	연결도로
기정			보1	5	112	559	특수도로	연1	대로3-12	보행자 도로
변경			보1	5~6	108	623	특수도로	연1	대로3-12	보행자 도로

※ 금회 사업은 보행자 도로1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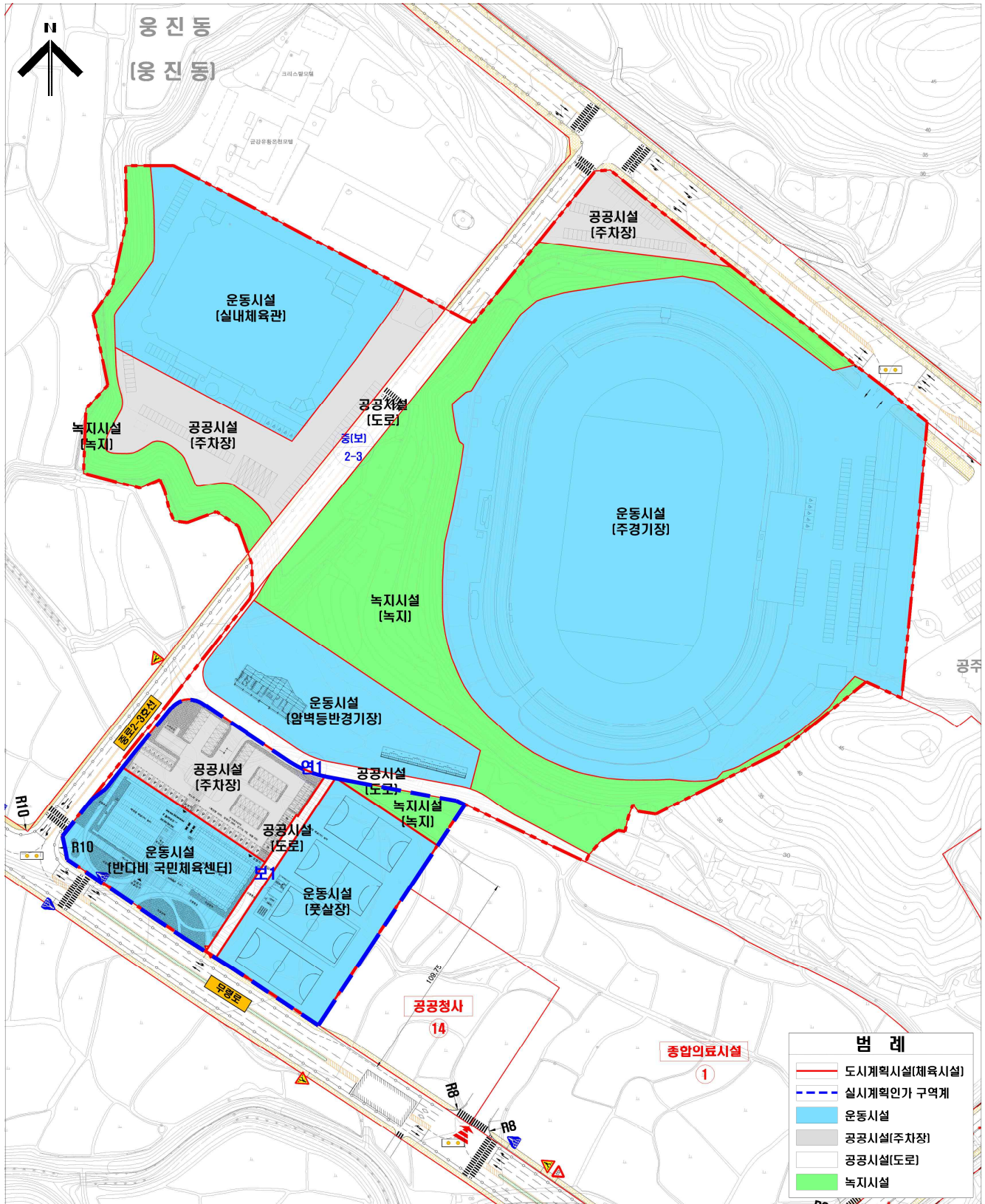
다. 건축물의 높이 및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

시설명	높이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암벽등반경기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풋살장	4층 이하	20% 이하	8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제16호 제57조 제16호

【 체육시설 조성계획도(기정) 】



【 체육시설 조성계획도(변경) 】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5,187	17,199	-	-	-	-	-	-	
1	웅진동 259	답	765	765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	웅진동 259-1	답	569	569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3	웅진동 260-1	구	96	96	공주시 반죽동 ***	김○석	100/100	-	-	-	
4	웅진동 260-2	답	2,119	2,119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5	웅진동 260-3	답	1,754	1,754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6	웅진동 260-4	구	175	175	공주시 반죽동 ***	김○석	100/100	-	-	-	
7	웅진동 260-5	답	473	473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8	웅진동 260-6	답	512	511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9	웅진동 261	답	1,070	1,070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0	웅진동 261-1	답	251	251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1	웅진동 261-2	답	86	86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2	웅진동 262	답	281	281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3	웅진동 262-1	전	131	40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4	웅진동 288	답	1,121	1,097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5	웅진동 288-1	전	202	75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6	웅진동 520	전	315	204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7	웅진동 520-1	전	163	1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8	웅진동 520-2	전	538	16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19	웅진동 576-2	답	1,266	460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0	웅진동 576-3	답	708	708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1	웅진동 577	답	2,810	2,810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2	웅진동 577-1	답	756	443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3	웅진동 577-2	답	837	568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4	웅진동 578-1	답	2,231	852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5	웅진동 578-2	답	446	446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6	웅진동 579-1	답	1,826	279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7	웅진동 579-2	답	58	58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8	웅진동 582-1	답	1,953	407	공주시 봉황로 *	공○시	100/100	-	-	-	
29	웅진동 737-20	도	340	34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	국○ ○○부	100/100	-	-	-	
30	웅진동 739-8	구	679	18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농○○○ ○○부	100/100	-	-	-	
31	웅진동 752-2	도	167	4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	국○ ○○부	100/100	-	-	-	
32	웅진동 753-1	도	489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 **	국○ ○○부	100/100	-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82-2번지 일원의 『국립소방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사업』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지정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82-2번지 일원
- 변경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63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명칭 : 국립소방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공공청사(국립소방연구원) 실시계획(변경)인가 면적 : 45,158.0㎡ → 45,434.6㎡[증] 276.6㎡]

- 건축면적 : 3,470.90㎡ → 3,455.48㎡[감] 15.42㎡]
- 건축연면적 : 7,991.98㎡ → 8,009.91㎡[증] 17.93㎡]

4. 사업시행자 성명 · 주소

- 성명 : 국립소방연구원장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5. 사업기간 : 2023. 10. 16. ~ 2026. 12. 31.

6. 공람기간 : 2026. 8. 3. ~ 2026. 8. 18. (15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사곡면 행정복지센터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8. 18.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전 담당자에게 연락 후 내방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기정)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58,751	45,158							
1	계실리 580-4	답	96	96	-	국 (소방청)	100/100	-	-	-	
2	계실리 581-5	답	3,246	3,246	-	국 (소방청)	100/100	-	-	-	
3	계실리 581-7	답	318	23	-	국 (소방청)	100/100	-	-	-	
4	계실리 581-8	답	1,698	1,472	-	국 (소방청)	100/100	-	-	-	
5	계실리 581-9	답	2,884	2,884	-	국 (소방청)	100/100	-	-	-	
6	계실리 582-1	답	2,168	1,798	-	국 (소방청)	100/100	-	-	-	
7	계실리 582-2	답	2,968	2,916	-	국 (소방청)	100/100	-	-	-	
8	계실리 582-3	답	2,626	2,626	-	국 (소방청)	100/100	-	-	-	
9	계실리 582-4	답	3,915	3,915	-	국 (소방청)	100/100	-	-	-	
10	계실리 583-1	답	1,818	1,818	-	국 (소방청)	100/100	-	-	-	
11	계실리 583-2	답	2,031	2,031	-	국 (소방청)	100/100	-	-	-	
12	계실리 584	답	361	361	-	국 (소방청)	100/100	-	-	-	
13	계실리 585-1	답	829	401	-	국 (소방청)	100/100	-	-	-	
14	계실리 585-2	답	1,200	778	-	국 (소방청)	100/100	-	-	-	
15	계실리 585-3	답	1,544	27	-	국 (소방청)	100/100	-	-	-	
16	계실리 585-4	답	2,099	51	-	국 (소방청)	100/100	-	-	-	
17	계실리 585-5	답	2,658	181	-	국 (소방청)	100/1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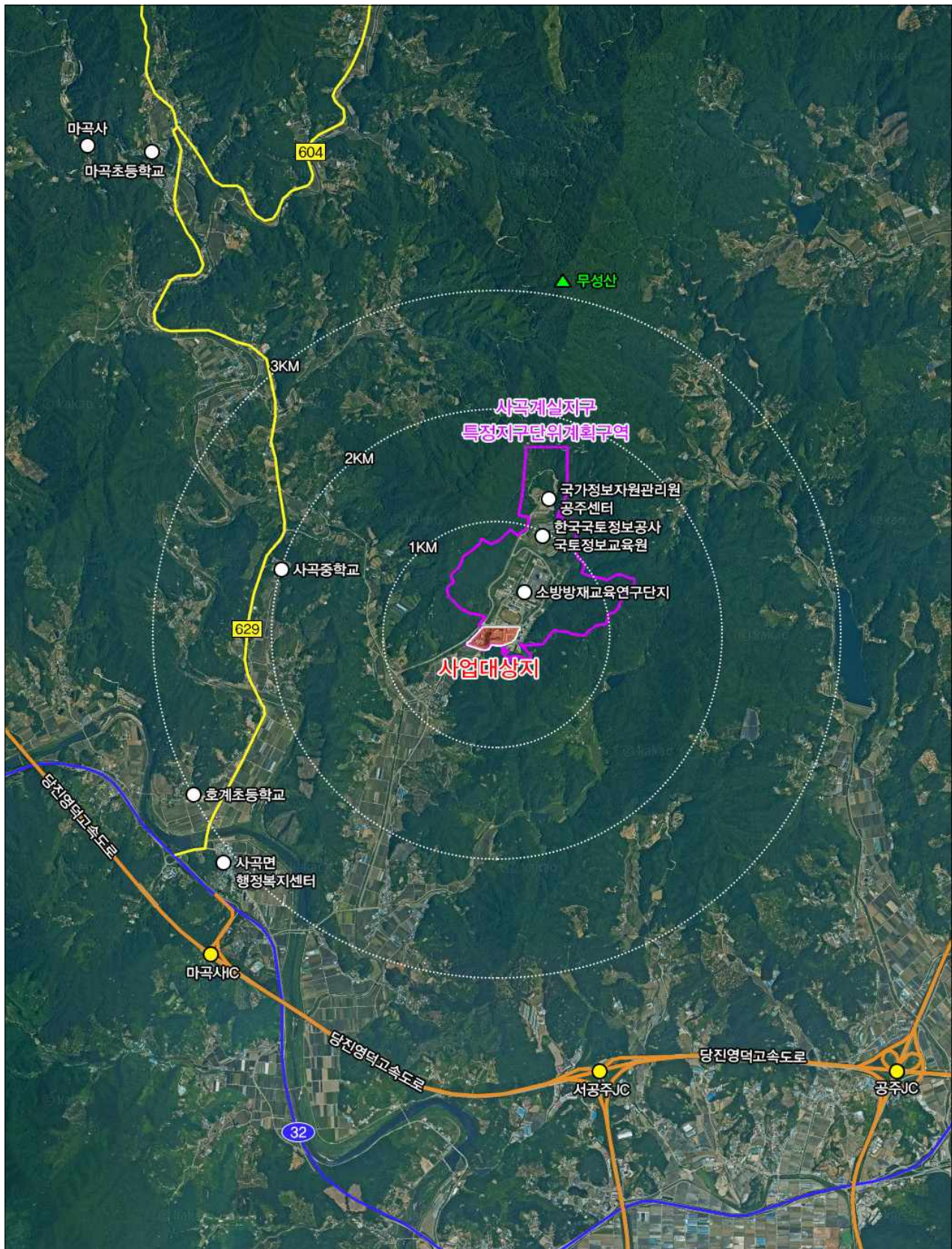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계실리 585-6	답	3,367	1,577	-	국 (소방청)	100/100	-	-	-	
19	계실리 599-1	도	72	72	-	국 (소방청)	100/100	-	-	-	
20	계실리 600	도	521	521	-	국 (소방청)	100/100	-	-	-	
21	계실리 601-1	도	2,170	1,611	-	국 (소방청)	100/100	-	-	-	
22	계실리 602	도	1,687	1,687	-	국 (소방청)	100/100	-	-	-	
23	계실리 603-1	도	219	219	-	국 (소방청)	100/100	-	-	-	
24	계실리 605-1	도	1,607	1,101	-	국 (소방청)	100/100	-	-	-	
25	계실리 620	구	2,081	1,967	-	국 (소방청)	100/100	-	-	-	
26	계실리 620-2	구	174	174	-	국 (소방청)	100/100	-	-	-	
27	계실리 621	구	325	293	-	국 (소방청)	100/100	-	-	-	
28	계실리 622-1	구	895	876	-	국 (소방청)	100/100	-	-	-	
29	계실리 622-5	구	1,665	843	-	국 (소방청)	100/100	-	-	-	
30	계실리 산17-4	임	11,509	9,593	-	국 (소방청)	100/100	-	-	-	

■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59,192.6	45,434.6							
1	계실리 635	대	59,192.6	45,434.6	-	국 (소방청)	100/1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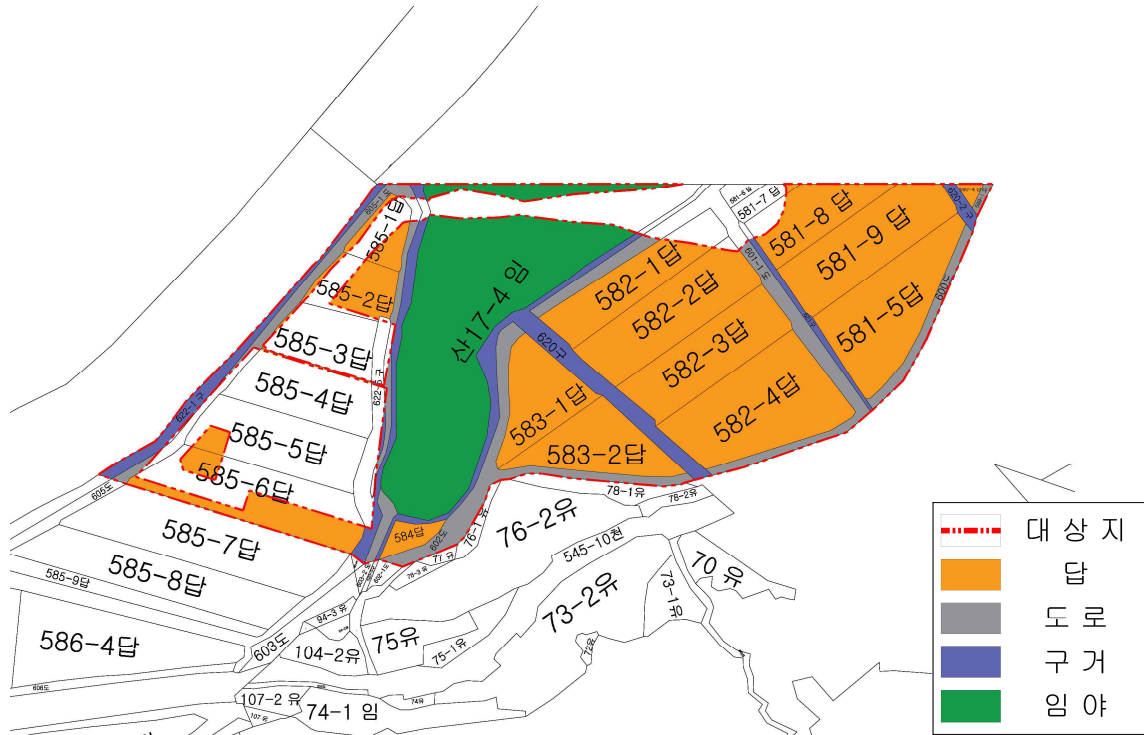
[참고자료] 위치도 및 사업계획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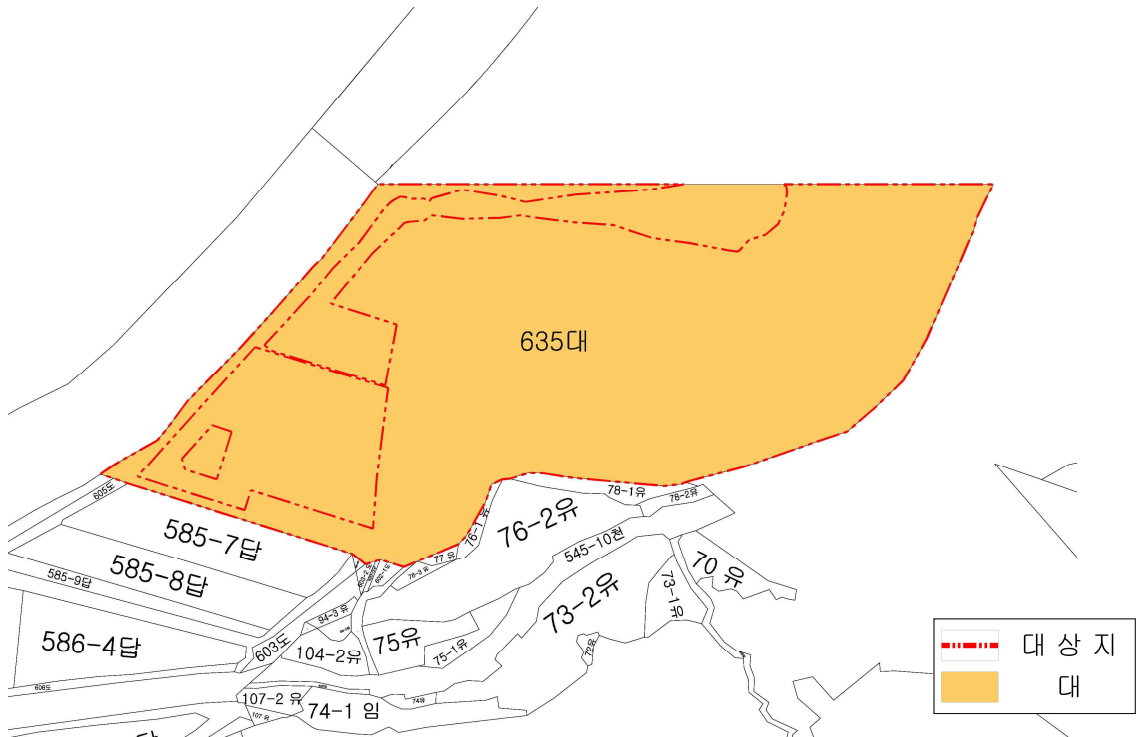


■ 지적도(확정측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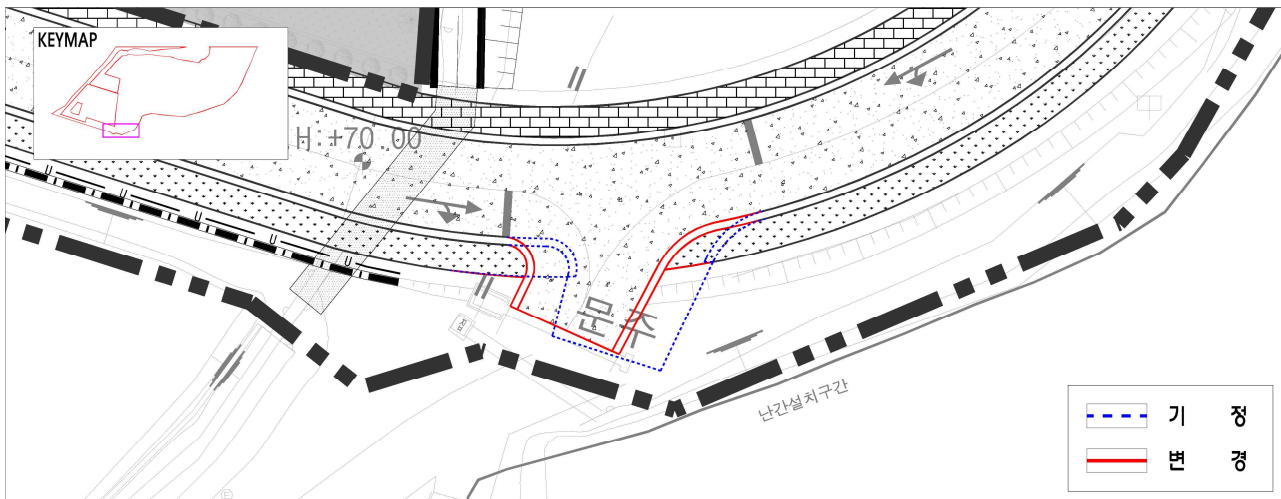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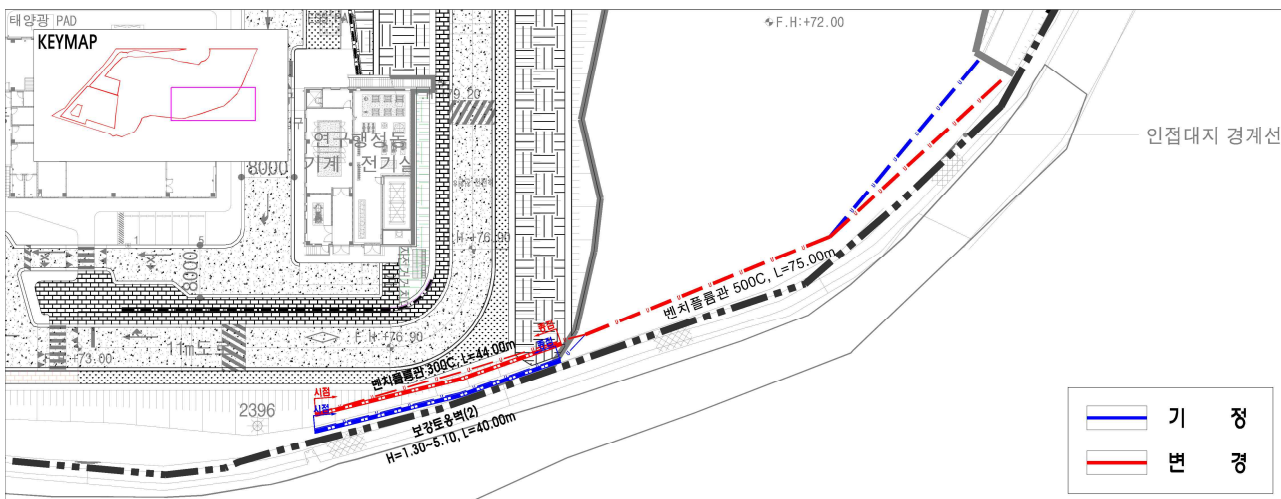


■ 공사 진행중 일부 설계 변경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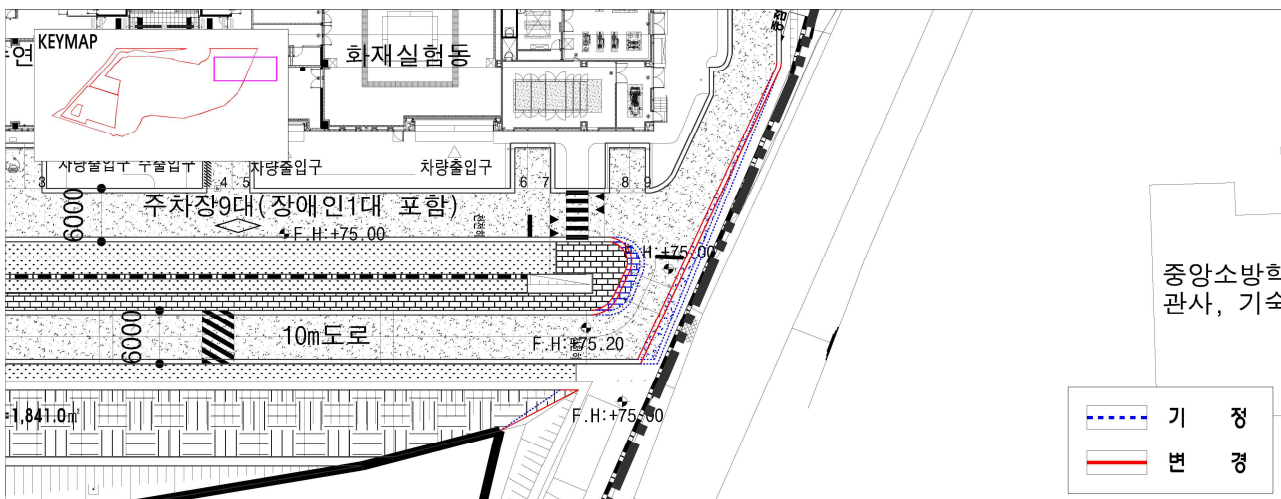
변경사항 1 : 진·출입로 선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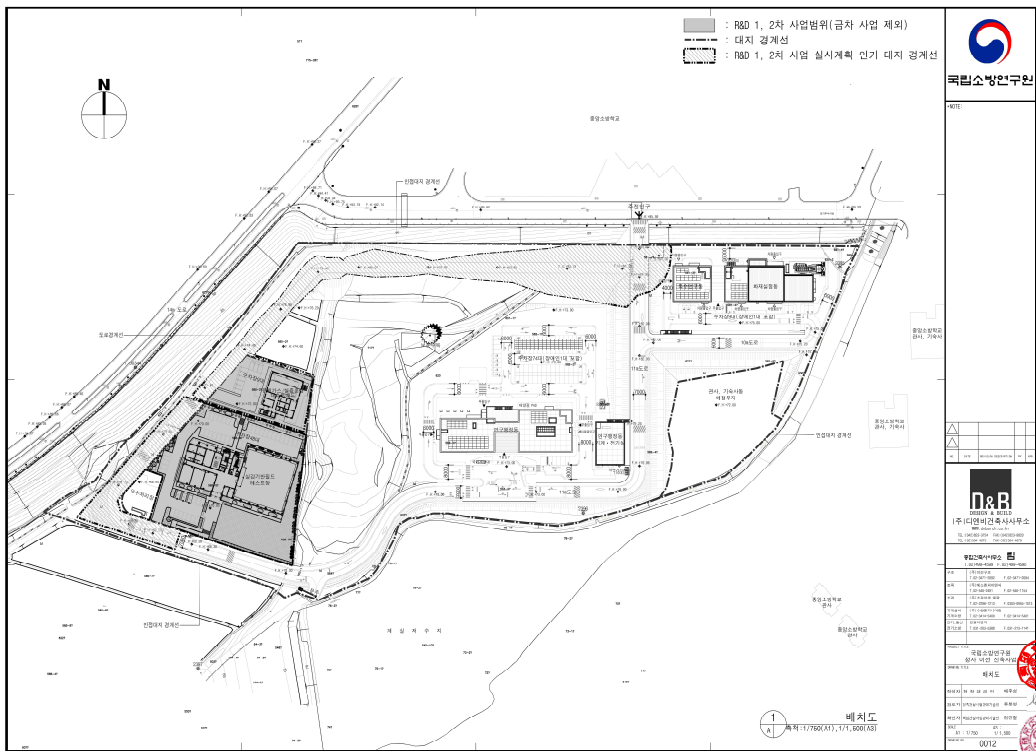
변경사항 2 : 우수관(벤치플름관) 및 보강토옹벽 위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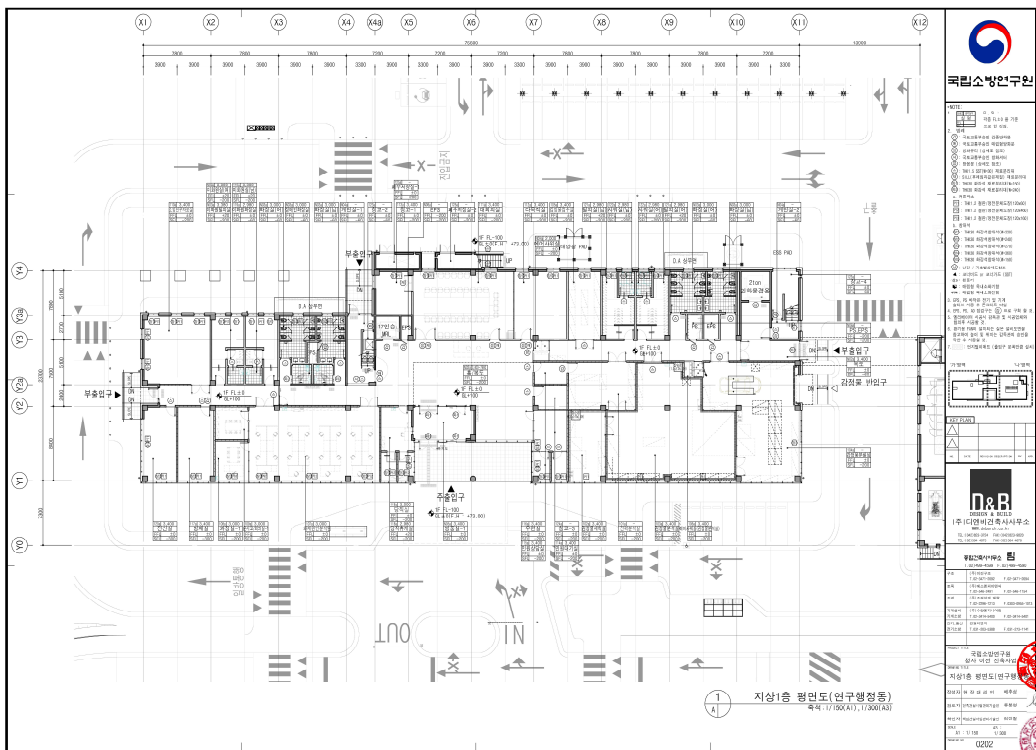
변경사항 3 : 내부도로·사면보호공 선형 및 포장 변경



■ 배치도



■ 지상1층 평면도(연구행정동)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탄천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 근로자·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급되었으나, 그간 관리·운영에 관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선정, 임대료·관리비 부과·징수, 계약 해지 및 퇴거 등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나. 이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 간 권리·의무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리비 체납,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둘러싼 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법정

관리사항의 이행 근거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

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입주자격·선정절차, 임대기간 및 재계약, 주택 임대 및 관리 업무대행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선정절차(안 제3조~제5조)

다. 입주자의 의무 및 임대기간(안 제6조, 제7조)

라.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안 제8조)

마.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안 제9조)

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시설 유지·보수(안 제10조, 제11조)

사.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업무대행(안 제12조,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7. 31. ~ 2026. 8. 20.[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투자유치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투자유치실(산업단지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본관2층 투자유치실/ 우편번호: 32552

- 이메일 : tjrwndud22@korea.kr

- 전 화 : 041-840-2193 / FAX : 041-841-3702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의 건

입법예고(안)	의 건(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투자유치실 산업단지팀 (☎ 041-840-219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1-3702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탄천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등 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동전기료”란 임대주택의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 자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탄천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
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3. 시 관내 입주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
4.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요자

제5조(입주자 선정) ① 모집공고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제1순위: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②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입주대기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대기자의 순번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기자에게 입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간 등) ① 최초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자의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 입주자의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임대료는 관리주체가 매월 부과·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관리주체가 계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월 부과·징수한다.

③ 입주자는 매월 관리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전기료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공가세대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 또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9조(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관리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 등 절차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임대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대료 중에서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주택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다.

제11조(유지 및 보수)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가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관리주체가 보수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등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제13조(업무 대행 등) ① 시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계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 및 계약에 따라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임대기간 및 그 밖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 계약에 따른 재계약을 포함한다.

제3조(신규 입주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부터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대인 지위의 승계)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임대인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공주시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6-2187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하 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 민원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 및 적정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관련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방지단 추천 대상 비영리법인 요건을 주소지 기준 및 수렵면허 소지 등에 대하여 구체화 함. (안 제7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3. ~ 2026. 8. 24.(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24일까지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512 FAX : 041-840-3736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 041-840-8512)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3736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주야생동식물
관리협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비영
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1.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공주시에 둔 수렵협회
2.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공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는 회원 수 50명 이상인 수렵협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위임한 사항인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2조)
- 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 ~ 제12조)
- 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등(안 제13조~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7. 31. ~ 2026. 8. 20. (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 (참조: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전화: (041) 840 - 7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7925
- 팩스 : (041) 840-3737
- 전자우편 : kkinyong@korea.kr

5. 참고사항

이 규칙의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840-7925)

☐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ㄴ FAX : 041-840-7925, 전자우편 : kkinyong@korea.kr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회계·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회계감사인의 선임

제13조(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과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회계감사인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 등)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해 누리집 등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는 예산(예정가격) 범위에서 회계감사 보수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점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정 결과 최고 득점자가 변경된 때에는 기존 선임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 결과에 따른 최고 득점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⑥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거나, 공개모집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제4항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⑦ 제6항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 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⑧ 회계감사 보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공주시 상수도 공기업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 평가 (30)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 년 이상 (5)	10 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 인 이상 (5)	15 인 이상 (4)	10 인 이상 (3)	5인 이상 (2)	5인 미만 (1)	
	③ 신인도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 건 미만 (2)	10 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실적	15	10 건 이상 (15)	8건 이상 (13)	6건 이상 (11)	4건 이상 (9)	4건 미만 (7)	
정성 평가 (70)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합 계		100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소관 부서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첨단 AI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 ☐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콘텐츠 공급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

2. 주요내용

- ☐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근거 마련(제3조)

- 기반조성사업, 정보수집·조사 연구,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 등 공주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위탁 명시(제4조)
- 소속 공무원 파견 근거 및 예산의 집행 투명성을 위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제5조~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3. ~ 2026. 8. 24.[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문화예술과(문화시설운영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문화예술과 (우편번호 32552)
- 이메일 : doorif@korea.kr
- 전 화 : 041-840-8351 / FAX : 041-840-3725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제2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등”이라 한다)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주시 콘텐츠산업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공주시 콘텐츠산업등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3. 공주시 콘텐츠산업등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4. 콘텐츠산업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7. 16.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중동골길 18 외 5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5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7. 16.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주문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의 공주문화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 고시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 관광과(041-840-841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합니다.

2026. 08. 03.

공 주 시 장

가. 관광지명 : 공주문화 관광지

나.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

다. 지정면적 : 795,934m²(변경없음)

라. 시 행 자 : 공주시장(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 1997년~2034년(변경없음)

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조서 : 붙임1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조서

□ 관광지 지정 내역[[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지정	공주문화 관광지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	795,934	795,934	－	변경 없음

□ 조성계획 총괄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795,934	100.0	
공공·편익시설	146,356	18.4	마을회관, 주차장, 고마문화복합센터, 이벤트 광장, 도로
숙 박 시 설	170,614	21.4	한옥마을, 한옥콘도미니엄, 백제문화스테이, 유스호스텔
상 가 시 설	21,030	2.6	백제왕도체험마을, 상가
관광 휴양·오락시설	156,946	19.8	캠핑장, 백제왕도유산관, 백제문화전당, 레포츠 센타, 호수공원, 생태체험장, 전망휴게소
기타시설	300,988	37.8	공예공방촌, 녹지(35.0%)

□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변경내역

구 분	표시 번호	토지이용계획(㎡)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관광시설(동)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95,934	37,598.56	37,598.46	74,331.48	151	152	—
공공·편익시설지구		146,356	3,720.63	3,720.53	6,643.41	3	4	—
마을회관	4	600	98.00	98.00	98.00	1	1	1층
주차장1	5	6,125	—	—	—	—	—	—
고마문화복합센터	6	41,770	3,175.00	3,175.00	6,124.00	1	1	2층
이벤트광장	13	8,210	—	—	—	—	—	—
주차장2	14	24,562	447.63	447.53	421.41	1	2	1층
도로	21	65,089	—	—	—	—	—	—
숙박시설지구		170,614	22,593.60	22,593.60	49,197.60	115	115	—
한옥마을1	1	32,770	3,100.00	3,100.00	3,100.00	9	9	1층
콘도미니엄(한옥)	2	39,330	7,856.00	7,856.00	23,568.00	7	7	3층
한옥마을2 (충청감영생생마을)	7	37,433	7,681.00	7,681.00	14,573.00	64	64	1~2층
백제문화스테이	9	24,750	1,956.60	1,956.60	1,956.60	33	33	1층
유스호스텔	18	36,331	2,000.00	2,000.00	6,000.00	2	2	3층
상가시설지구		21,030	1,997.00	1,997.00	1,997.00	19	19	—
백제왕도체험마을	10	15,930	1,097.00	1,097.00	1,097.00	13	13	1층
상가3	16	5,100	900.00	900.00	900.00	6	6	1층
관광휴양· 오락시설 지구		156,946	8,370.33	8,370.33	14,319.47	12	12	—
캠핑장	3	23,691	200.00	200.00	200.00	3	3	1층
백제왕도유산관	11	23,028	1,664.00	1,664.00	2,758.00	4	4	2층
백제문화전당	12	25,595	3,794.33	3,794.33	3,937.47	1	1	2층
레포츠센터	15	35,790	2,300.00	2,300.00	6,900.00	1	1	3층
호수공원	17	31,637	150.00	150.00	150.00	1	1	1층
생태체험장	19	16,605	150.00	150.00	150.00	1	1	1층
전망휴게소	20	600	112.00	112.00	224.00	1	1	2층
기타시설지구		300,988	917.00	917.00	2,174.00	2	2	—
공예공방촌	8	22,197	917.00	917.00	2,174.00	2	2	2~4층
녹 지	—	278,791	—	—	—	—	—	—

※ 기정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6-124호(2026.03.10.))내용 오기사항 정정

※ 4차 교통영향평가(2026.05.) 심의의견을 반영한 일부 시설별 내부 주차장계획 변경 반영
/ 금회 시설별 면적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임목폐기물 보관창고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8월 3일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3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명칭 : 임목폐기물 보관창고 설치공사
- 목적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적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임목폐기물 보관창고 설치공사 ($A=240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명 : 대길환경 주식회사 유만중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백제큰길 109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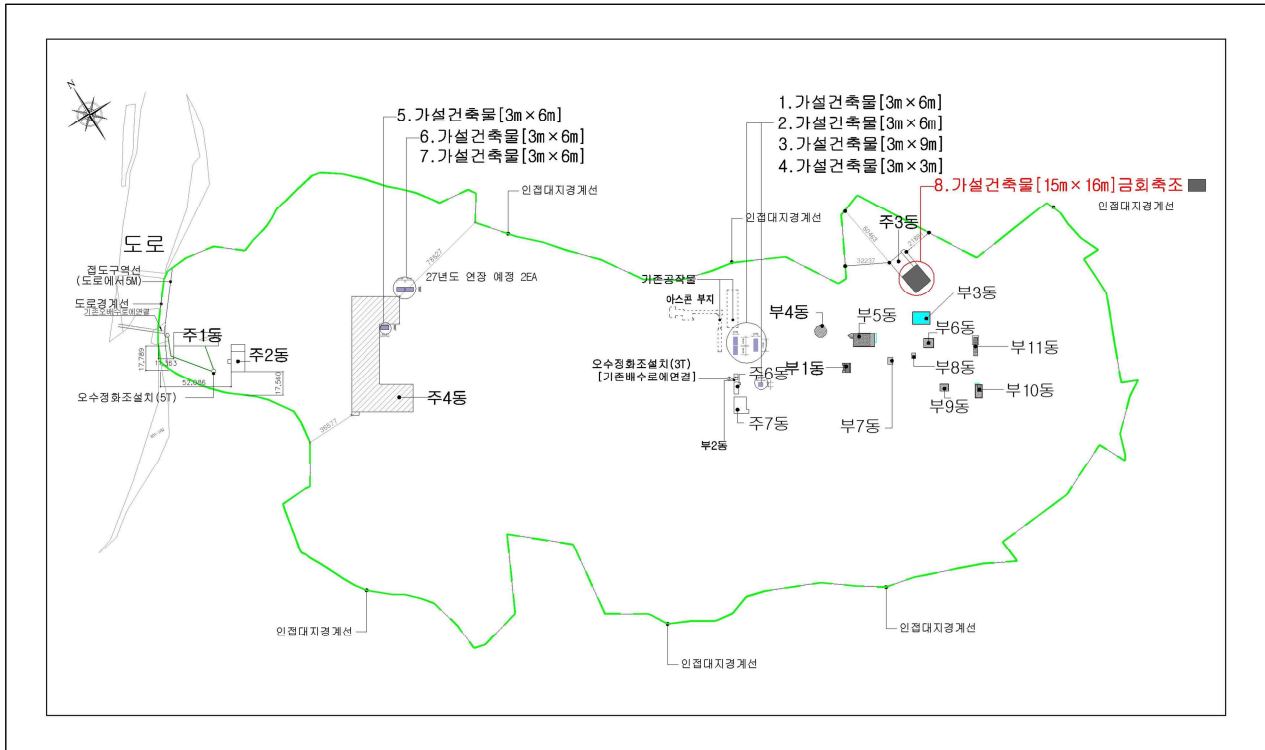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2. 공사계획도면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토지소재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38필지		155,493	155,493			
1	이인	만수	495-1	잡	18,490	18,49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	이인	만수	495-3	잡	1,232	1,23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	이인	만수	435-3	잡	19,969	19,96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4	이인	만수	435-15	잡	1,543	1,543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5	이인	만수	435-18	잡	2	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6	이인	만수	435-20	잡	2,535	2,53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7	이인	만수	435-22	잡	36,466	36,466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8	이인	만수	500-1	잡	2,849	2,84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9	이인	만수	500-2	잡	2,111	2,11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0	이인	만수	435-4	잡	6,419	6,41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1	이인	만수	435-26	잡	79	7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2	이인	만수	435-28	잡	427	42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3	이인	만수	435-2	잡	42,235	42,23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4	이인	만수	435-7	잡	1,284	1,284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5	이인	만수	435-10	잡	918	918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6	이인	만수	435-12	잡	881	88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7	이인	만수	435	잡	902	90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8	이인	만수	436	잡	635	63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19	이인	만수	435-1	잡	165	16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0	이인	만수	493	잡	1,007	1,00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1	이인	만수	494	잡	2,079	2,07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2	이인	만수	495	잡	179	17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3	이인	만수	496	잡	622	622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4	이인	만수	496-1	잡	274	274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5	이인	만수	497	잡	450	45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6	이인	만수	497-1	잡	1,107	1,10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7	이인	만수	498	잡	185	185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8	이인	만수	499	잡	417	41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29	이인	만수	500	잡	1,660	1,66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0	이인	만수	501	잡	296	296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1	이인	만수	501-16	잡	111	11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2	이인	만수	502-3	잡	89	89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3	이인	만수	502-4	잡	21	21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4	이인	만수	502	잡	3,178	3,178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5	이인	만수	502-2	잡	550	550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6	이인	만수	530	잡	557	557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7	이인	만수	531	잡	53	53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38	이인	만수	532	잡	3,516	3,516	대길환경(주)	이인면 만수리 493	

붙임2. 공사계획도면



도시관리 계획도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967 호서극장 관람료 고시

「공주시 1967 호서극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1967 호서극장’의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성인	5,000원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공주시민	무료	온누리 공주시민	50% 할인	연계관광지 관람객	50% 할인	
유아		다자녀(2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15인이상 단체		할인쿠폰	30% 할인	
국가유공자						

※ 관람료 감면 및 면제는 학생증(청소년증), 휴가증, 신분증 등 본인 확인 후 적용

※ 본 관람료는 8월 1일 이후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운영팀(☎041-840-8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공 주 시 장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웅진동 29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08. 03.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웅진동 29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 칭 : 공주종합운동장 내 암벽등반경기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 암벽 등반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인내심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청소년 및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공주시 체육활동 및 관련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고자 공주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함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면적 = 117,094.00㎡ 중 9,257㎡
 - 인공암벽등반경기장 : 6,046㎡, 도로 : 1,904㎡, 녹지 : 1,307㎡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사업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	1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공주시 웅진동 308-1번지 일원	117,094	'77.02.17.	-
시행	1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공주시 웅진동 290번지 일원	9,257	-	금회

5.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공주시장(교육체육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8.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2. 공사계획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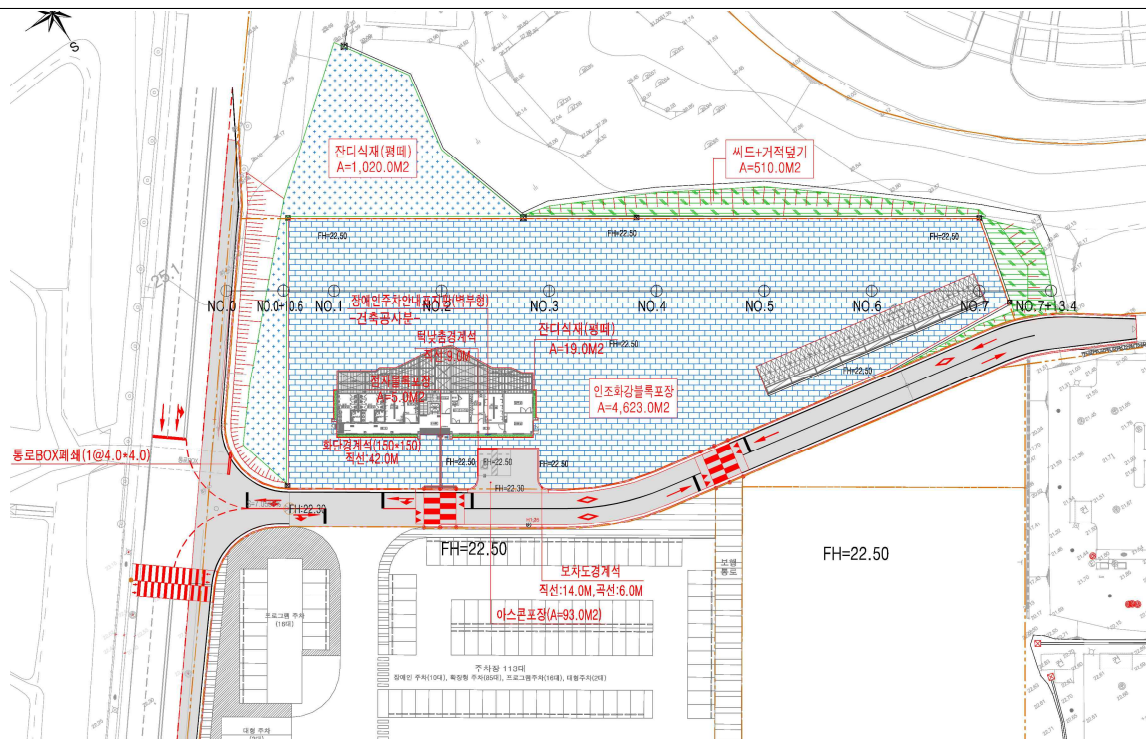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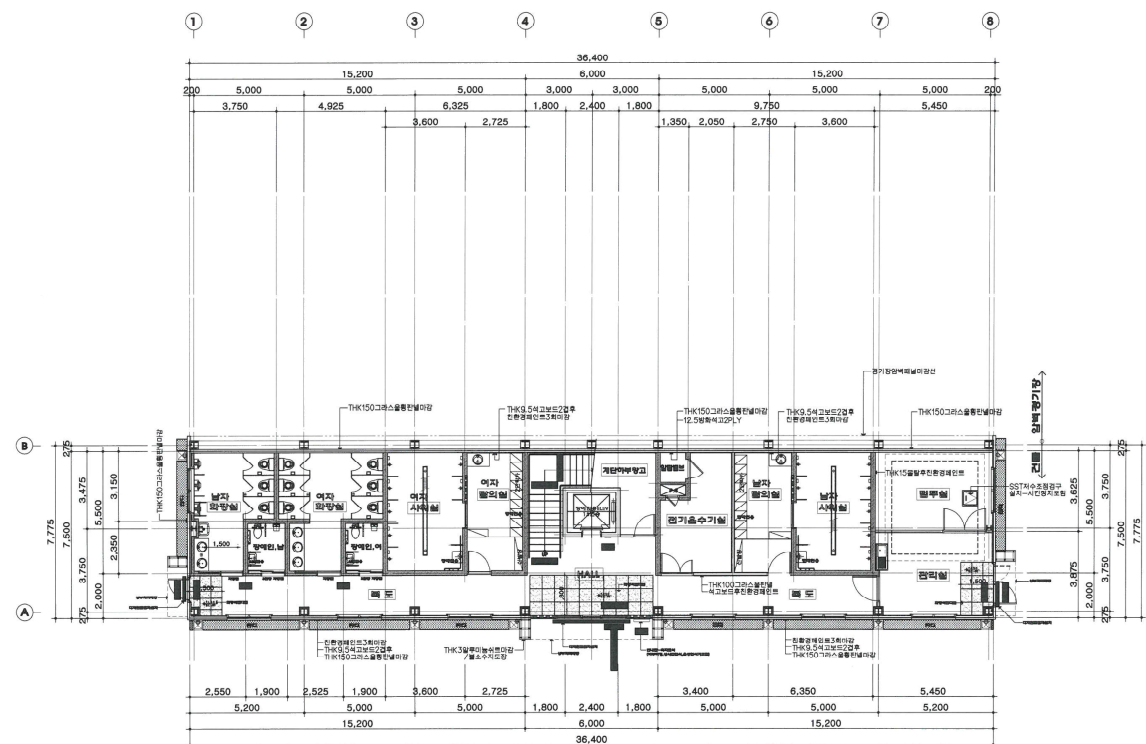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72,862	9,257	-	-	-	-	-	-	
1	웅진동 262-1	전	131	90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	웅진동 288	답	1,121	24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3	웅진동 288-1	전	202	127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4	웅진동 289	전	165	165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5	웅진동 290	전	1,330	1,330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6	웅진동 290-1	전	151	151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7	웅진동 291	대	660	659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8	웅진동 291-1	전	603	603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9	웅진동 292	전	1,615	1,615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0	웅진동 292-1	전	48	48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1	웅진동 293	채	564	254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2	웅진동 293-1	채	180	180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3	웅진동 294-1	도	1,096	73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4	웅진동 294-2	답	335	1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5	웅진동 296-1	임	2,348	1,024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6	웅진동 296-2	전	1,362	871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7	웅진동 296-5	전	823	1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8	웅진동 300-5	채	52,335	90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9	웅진동 518-5	답	1,263	23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0	웅진동 519	전	76	72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1	웅진동 520	전	315	111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2	웅진동 520-1	전	163	162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3	웅진동 520-2	전	538	305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4	웅진동 520-3	전	128	110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5	웅진동 576-2	답	1,266	109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6	웅진동 577-1	답	756	55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7	웅진동 582-1	답	1,953	3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8	웅진동 739-8	구	679	401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국 (농림축산 식품부)	100/100	-	-	-	
29	웅진동 752-2	도	167	12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 교통부)	100/100	-	-	-	
30	웅진동 753-1	도	489	47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 교통부)	100/100	-	-	-	

붙임 2. 공사계획도면

공사
계획
평면도



외벽
암벽
경기장
1층
평면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서

사업시행지의 위치	공주시 웅진동 290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명 칭	공주종합운동장 내 암벽등반경기장 조성사업
	사업비	8,000,000,000원
인 가 내 용	◦ 사업 규모 - 인공암벽등반경기장 : 6,046㎡, 도로 : 1,904㎡, 녹지 : 1,307㎡	
사 업 시 행 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상 호 (대표자)	공주시장 (교육체육과장)
준 공 예 정 일	실시계획(변경) 인가일 ~ 2028. 0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붙임 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합니다. 2026. 08. 03. 공 주 시 장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암벽등반경기장 조성사업) 사업 -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사업시행에 있어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3. 인가조건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①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때
 - ③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③ 인가권자의 정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5. 관련 법 의제협의를 하지 않은 타법의 인·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맞도록 이행한 후 사업 추진하여야 함.
6. 사업시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사업자시행자 책임하에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일 또는 사업완료일에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유구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변경(1차)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유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 업 비
(당초) - 18,365백만원(국비 12,855, 도비 1,286, 시비 4,224)
(변경) - 18,365백만원(국비 12,855, 도비 1,286, 시비 4,224) ※ 시비 38백만원 별도(외서)
4.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중심지, 1차 배후마을),
신평면·사곡면(2차 배후마을) 일원
나. 면 적 : 26,221ha(중심지 203ha / 배후마을 26,018ha)

다. 사업개요

(1) 원스톱문화복합타운 조성

: AGAIN행복센터(지하1층 ~ 지상2층, 1,794㎡) 신축, 어린이 창의마당 조성, 주민문화 프로그램 및 청소년 행복+ 프로그램 운영

※ 연계사업 : 유구읍 행정복지센터(지하1층 ~ 지상2층, 1,437.79㎡) 신축

(2) 주민공동체 복원

: 비단거리 조성, 주민공동체 조직 육성·지원, 주민참여형 소액공모 사업

(3)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신평 행복나눔센터 및 사곡 야외 배드민턴장 조성, 행복나눔 프로그램 운영 등

5. 사업 예정기간

(당초) 2020년 ~ 2026년(7년)

(변경) 2020년 ~ 2028년(9년)

6. 사업의 효과 : 유구읍 중심지의 문화·복지 거점 기능을 보완하고 배후 마을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심지-배후마을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농촌사회 유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열람 기간 : 2026. 7. 22. ~ 2026. 8. 11.(20일간)

9.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재지		당초 승인고시('25.5.)					변경 승인(1차)('26.7.)					비고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총 계				35필지		15,853	15,853		45필지		25,412	17,974	-	
(유구읍 원스톱) 소 계				24필지		9,576	9,576		24필지		9,263	8,958		
원스톱	AGAIN	유구읍	석남리	264	대	96	96	공주시	264	대	96	92	공주시	
문화	행복센터			264-1	대	152	152	공주시	264-1	대	152	128	공주시	

복합타운 조성	및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266	대	27	27	공주시	266	대	27	23	공주시	
				268-1	대	2,382	2,382	공주시	268-9	대	2,370	2,370	공주시	분할
				384-116	대	965	965	공주시	384-116	대	965	965	공주시	
				388-1	대	698	698	공주시	388-1	대	698	698	공주시	
				388-2	대	906	906	공주시	388-2	대	906	859	공주시	
				388-12	대	281	281	공주시	388-12	대	281	281	공주시	
				388-27	대	1	1	공주시	388-27	대	1	1	공주시	
				388-28	대	94	94	공주시	388-28	대	94	10	공주시	
				388-29	대	144	144	공주시	388-29	대	144	144	공주시	
				388-30	대	169	169	공주시 외 3인	388-30	대	169	27	공주시 외 3인	분할예정
				388-31	대	37	37	공주시	388-31	대	37	37	공주시	
				388-32	대	198	198	공주시	388-32	대	198	198	공주시	
				390-1	대	635	635	공주시	390-1	대	635	635	공주시	
				391	대	962	962	공주시	391-1	대	839	839	공주시	분할
				392-1	대	1,190	1,190	공주시	392-3	대	1,063	1,063	공주시	분할
				392-2	대	334	334	공주시	392-4	대	331	331	공주시	분할
				393-2	대	142	142	공주시	393-29	대	94	94	공주시	분할
				440-23	대	10	10	공주시	440-23	대	10	10	공주시	
				440-27	대	17	17	공주시	440-27	대	17	17	공주시	
				442-37	대	14	14	공주시	442-37	대	14	14	공주시	
				442-41	대	23	23	공주시	442-41	대	23	23	공주시	
				450	구	99	99	공주시	450	구	99	99	공주시	
(유구읍 창의마당) 소 계				4필지		2,276	2,276		4필지		2,233	2,233		
	어린이 창의마당	유구읍	석남리	396-2	대	1,498	1,498	공주시	396-3	대	1,491	1,491	공주시	분할
				397	대	298	298	공주시	397-1	대	271	271	공주시	분할
				398	대	321	321	공주시	398	대	321	321	공주시	
				399	대	159	159	공주시	399-1	대	150	150	공주시	분할
(유구읍 비단) 소 계				2필지		208	208		2필지		208	208		
주민 공동체 복원	비단거리 (쉽티)조성	유구읍	석남리	442-41	대	23	23	공주시	442-41	대	23	23	공주시	
				292-13	주차장	185	185	공주시	292-13	주차장	185	185	공주시	
(신풍면) 소 계				2필지		3,126	3,126		5필지		4,453	4,361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신풍행복 나눔센터	신풍면	산정리	150-3	과	2,709	2,709		150-3	과	2,709	2,701	공주시	
				150-2	전	417	417		150-2	전	417	417	공주시	
									151	대	374	300	공주시	추가 도로분할예정

구축									152	전	814	806	공주시	추가 도로분할예정
									158-1	대	139	137	공주시	추가 도로분할예정
(사곡면) 소 계				3필지		667	667		10필지		9,255	2,214		
배드민턴장	사곡행복	사곡면	호계리	333	대	417	417	공주시	333	대	417	417	공주시	건축물 개인소유
	야외			334	전	109	109	개인	241-3	도	935	55	국토교통부	부지변경 도로점용 허가대상
				산33-16	임야	141	141	개인	241-15	도	180	31	국토교통부	부지변경 도로점용 허가대상
									243-23	도	89	12	국토교통부	부지변경 도로점용 허가대상
									243-18	전	1,204	1,085	개인	부지변경 분할예정
									243-24	전	329	329	개인	부지변경
									243-1	답	1,155	195	공주시	부지변경
									324-1	답	618	21	공주시	부지변경
									323-7	답	3,202	22	공주시	부지변경
									244-9	대	1,126	47	개인	부지변경 분할예정

10.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지역활력과 ☎ 041-840-237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7. 24.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먹자1길 23 외 12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3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0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041-840-825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 2026. 07. 24. >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구역 결정(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주시 강남지구(시도2호, 21호, 위임국도40호)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8. 3.

공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시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시도	2호선	유평~송곡	계룡면, 반포면 일원	227,685	계룡면 유평리 260-9	반포면 송곡리 1-2	-	15.86
변경	시도	21호선	화현~소학	계룡면,소학동 일원	204,277.8	계룡면 화현리 394-6	소학동 111	-	12.00
변경	국도	40호선	당진~공주	태봉동, 봉정동 일원	507,426	태봉동 316-3	봉정동 113-5	-	6.0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고시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7824)
-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2 참조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유평1	8	집산 도로	125	계룡면 유평리 260-9번지	계룡면 유평리 267-3번지	일반 도로	-	-	시도2호
신설	소로	2	유평2	8	집산 도로	2,010	계룡면 유평리 267-3번지	계룡면 하대리 470-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중장1	8	집산 도로	2,055	계룡면 중장리 88-3번지	계룡면 구왕리 454-2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상신1	8	집산 도로	3,680	반포면 상신리 212-6번지	반포면 온천리 433-107번지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공암1	8	집산 도로	3,880	반포면 공암리 564번지	반포면 송곡리 1-6번지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7	계룡면 기산리 494-1	계룡면 기산리 236-2	일반 도로	농공 단지	‘21.9.1	시도21호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695	계룡면 기산리 377-2	계룡면 기산리 395-12	일반 도로	농공 단지	‘21.9.1	
신설	소로	2	화현1	8	집산 도로	930	논산시 상월면 지구계	계룡면 화현리 228-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화현2	8	집산 도로	2,460	계룡면 화현리 228-3	계룡면 유평리 619-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유평3	8	집산 도로	4,370	계룡면 유평리 619-1	계룡면 기산리 377-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소학1	8	집산 도로	1,205	소학동 319-3	소학동 111	일반 도로	-	-	위임국도 40호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6,075	2호광장	주미동 지구계	일반 도로	서부우 회도로	‘85.4.3	
변경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7,780 (5,490)	2호광장	주봉리 지구계	일반 도로	서부우 회도로	‘85.4.3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유평1	소로2-유평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25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소로2-유평2	소로2-유평2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010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소로2-중장1	소로2-중장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055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소로2-상신1	소로2-상신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680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소로2-공암1	소로2-공암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880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중로2-1	중로2-1	• 도로 연장 변경 - 폭원 : 15m - 연장 : 317m → 1,695m 중) 1,378m	• 일부 구간에 대해 현황상의 도로 및 지적에 부합하도록 선형변경 • 시설로 미 결정된 구간 연장하여 결정
소로2-화현1	소로2-화현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930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소로2-화현2	소로2-화현2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460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소로2-유평3	소로2-유평3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4,370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소로2-소학1	소로2-소학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205m	• 기 조성된 현황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결정
대로3-1	대로3-1	• 도로 연장 변경 - 폭원 : 25m - 연장 : 6,075m → 7,780m 중) 1,705m	• 일부 구간에 대해 현황상의 도로 및 지적에 부합하도록 선형변경 • 시설로 미 결정된 구간 연장하여 결정

2)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광장	교통광장	봉정동 366-6번지 일원	50,545	-	50,545	'94.4.19	
변경	10	광장	교통광장	봉정동 366-6번지 일원	50,545	증)27,061	77,606	'94.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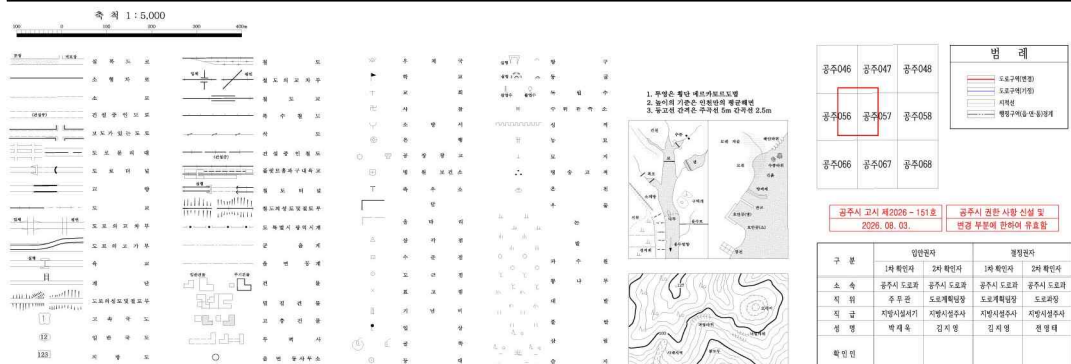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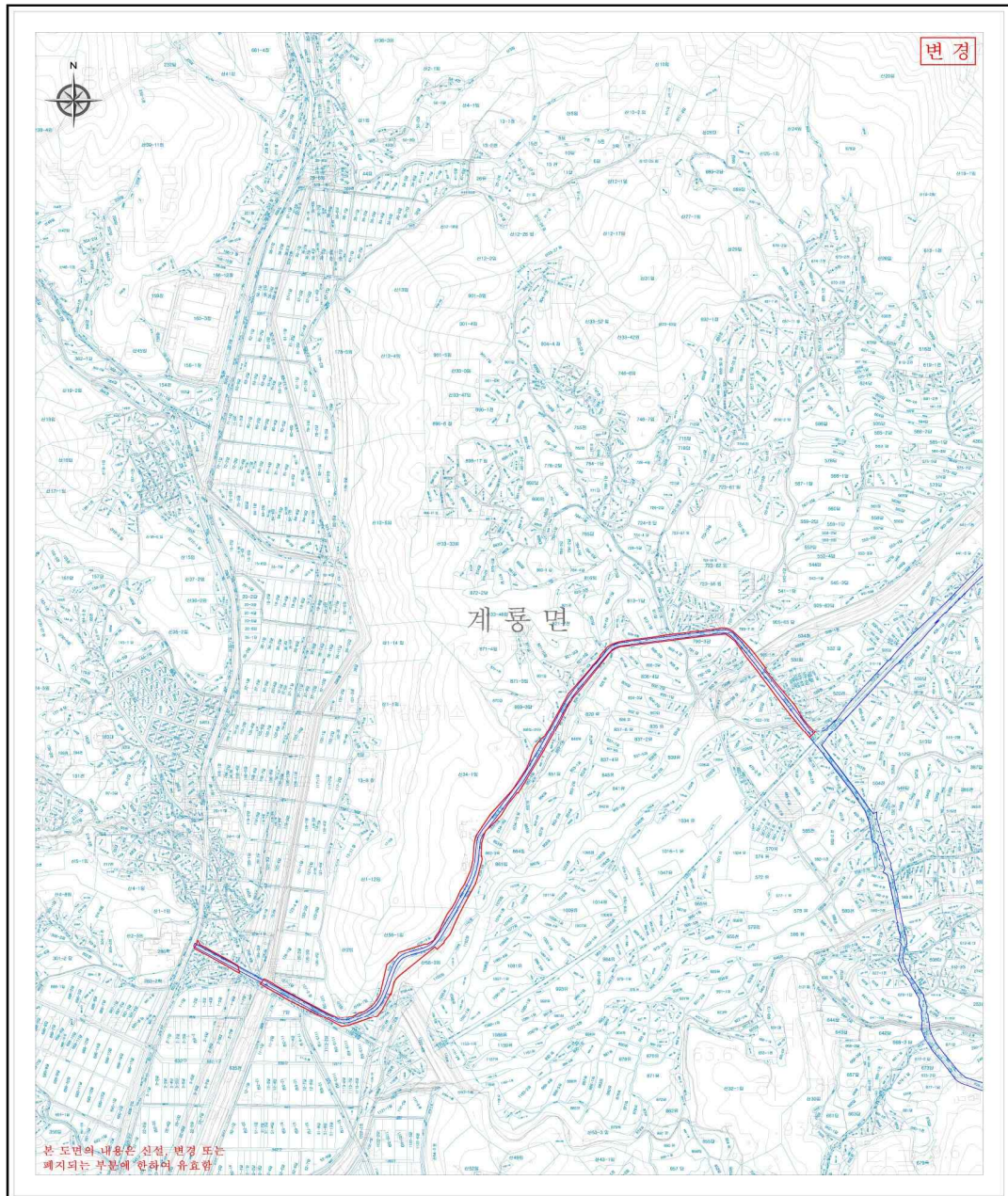
나)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광장	• 면적 변경 - 면적 : 50,545㎡ → 77,606㎡ 증) 27,061㎡	• 이용현황을 고려한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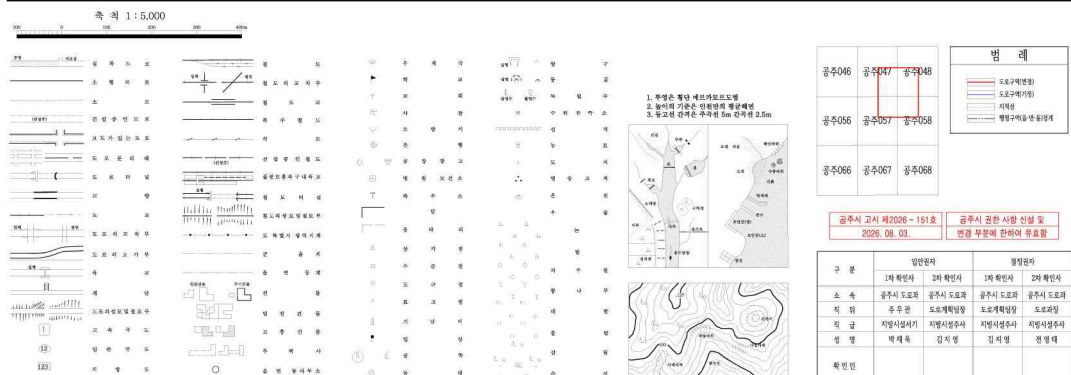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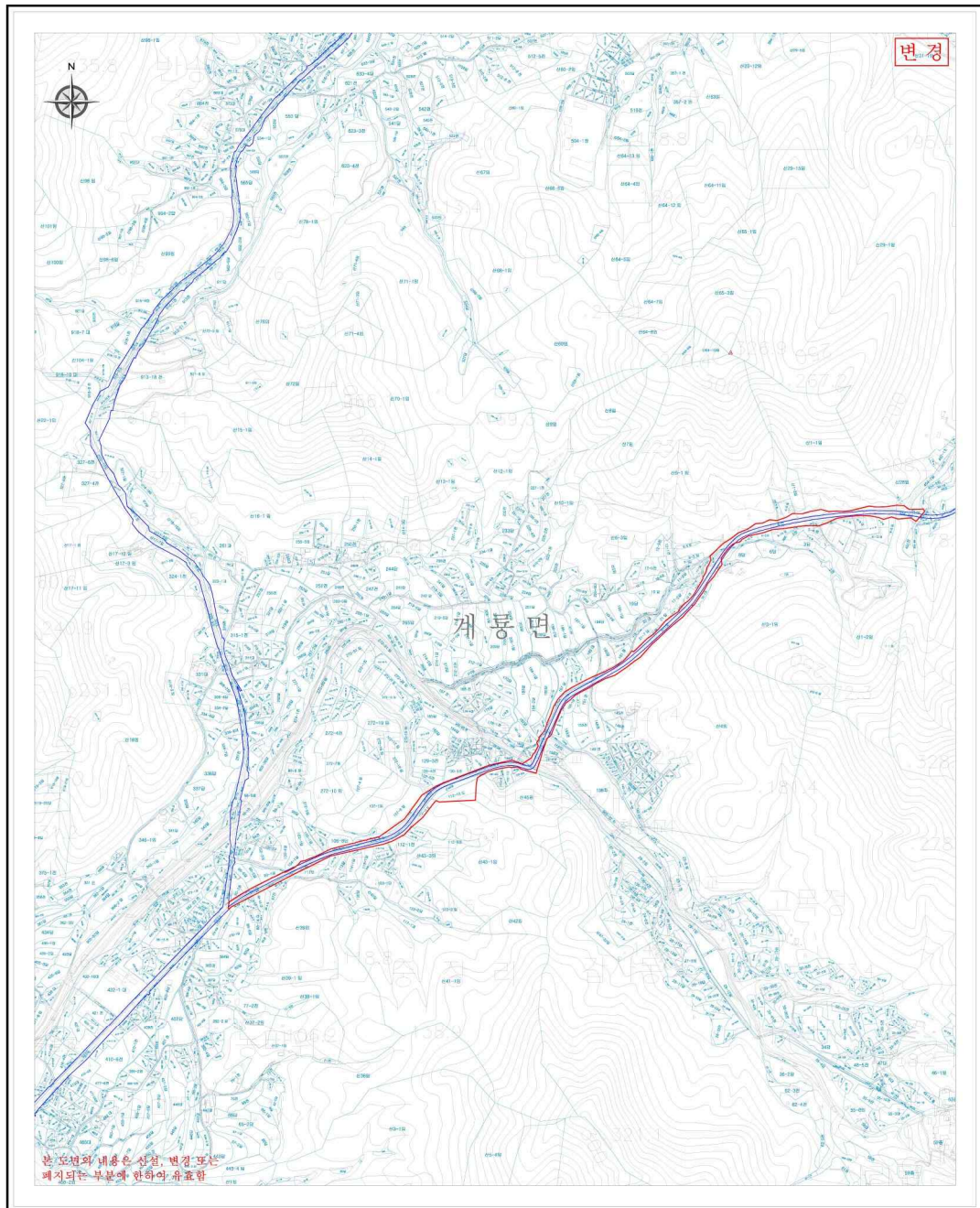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1 참조

붙임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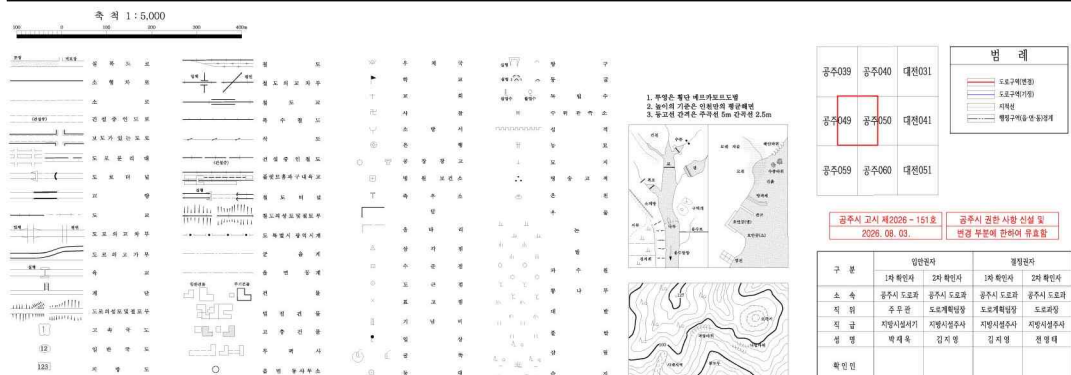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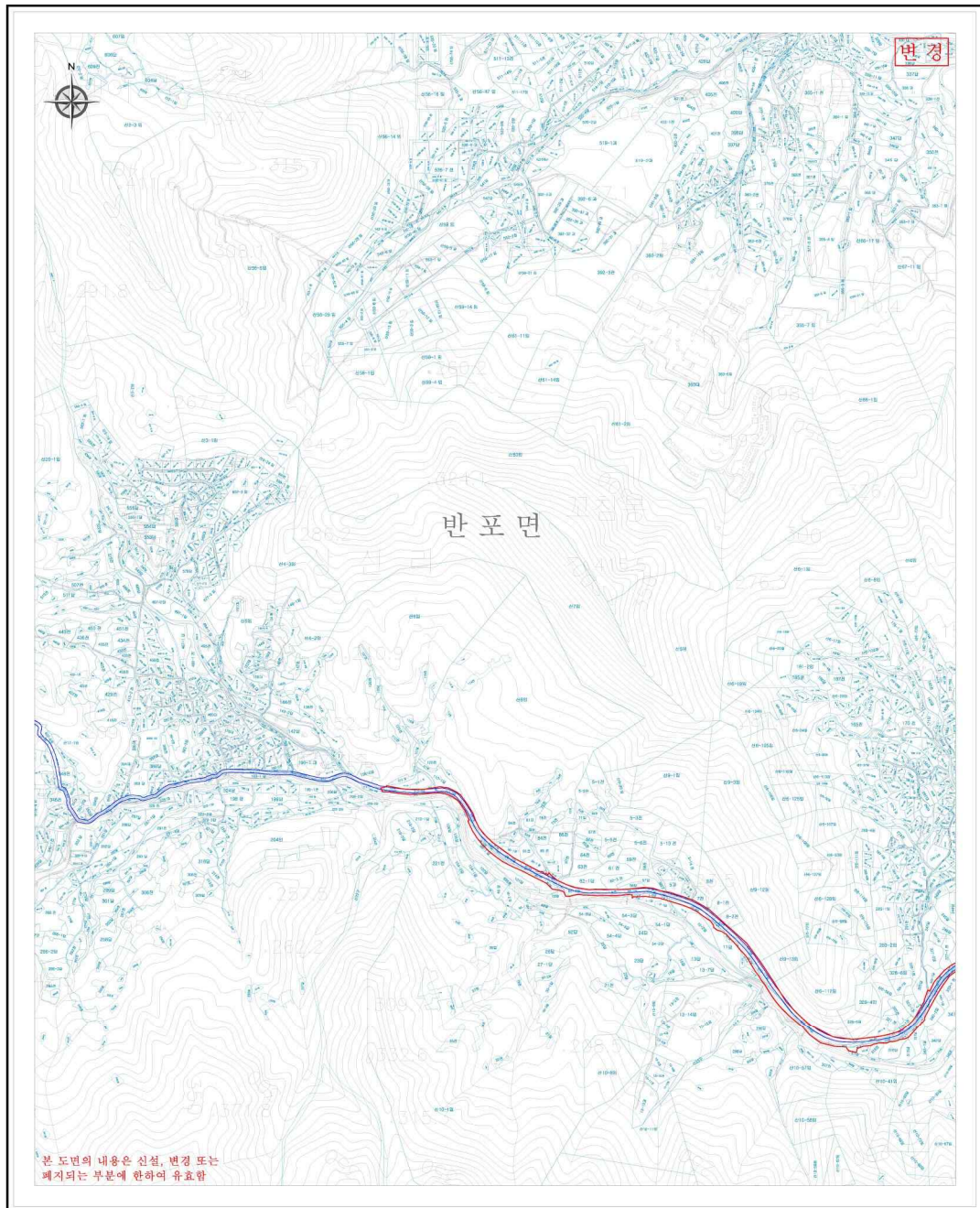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_시도2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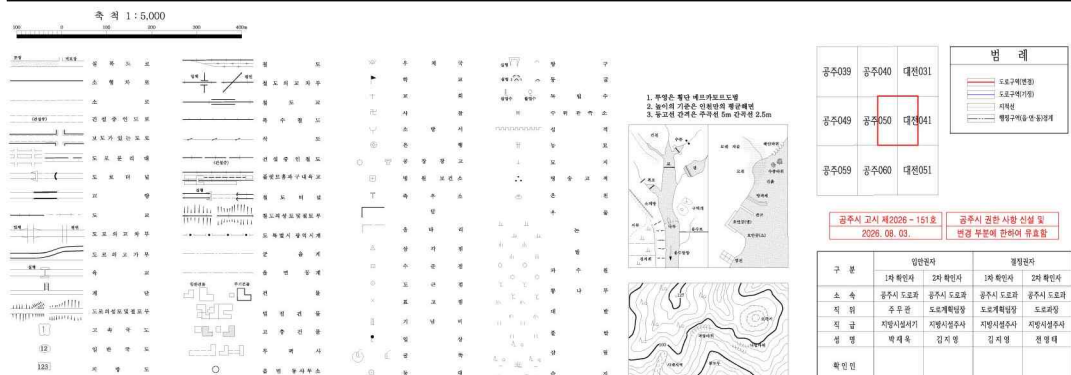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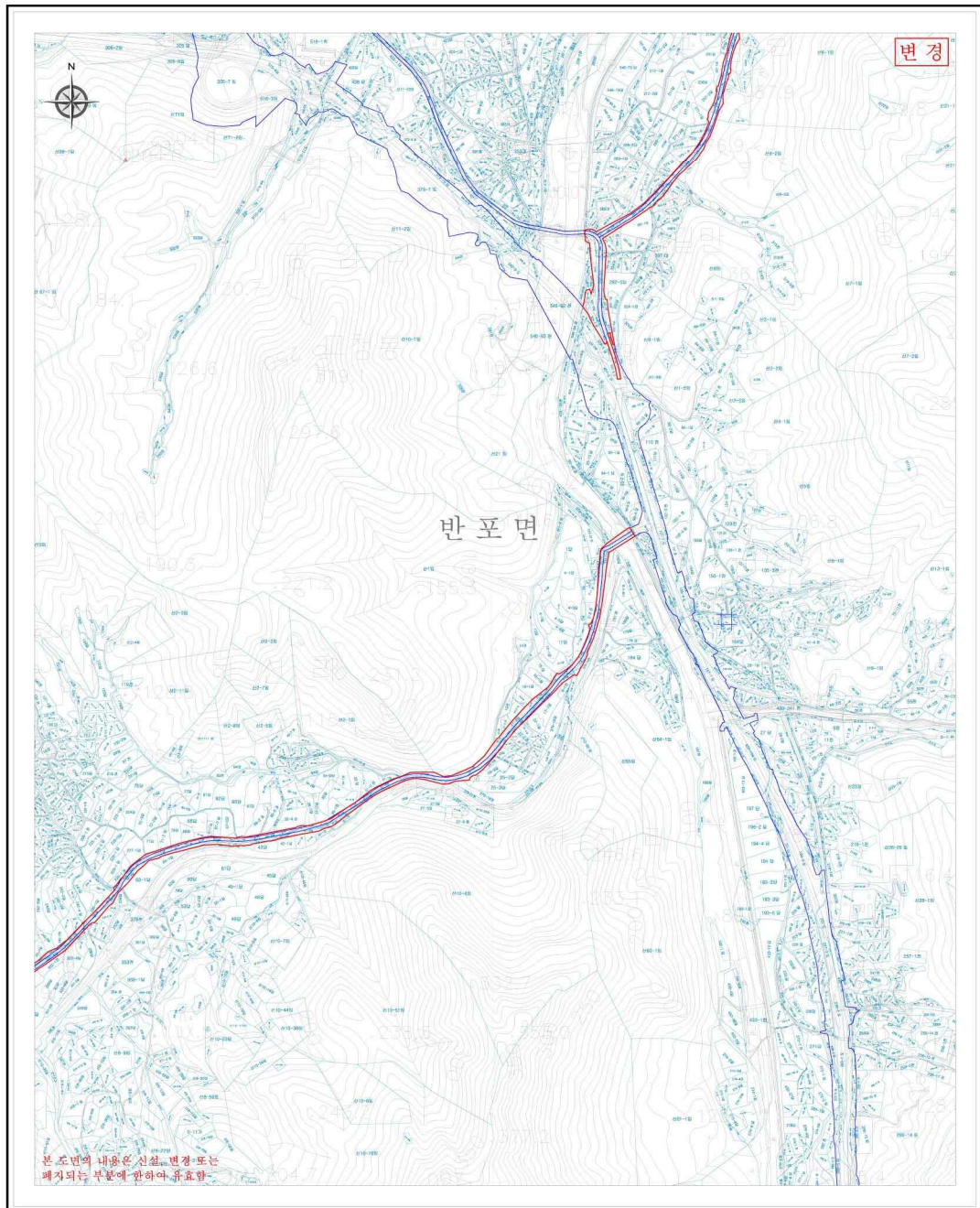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_시도2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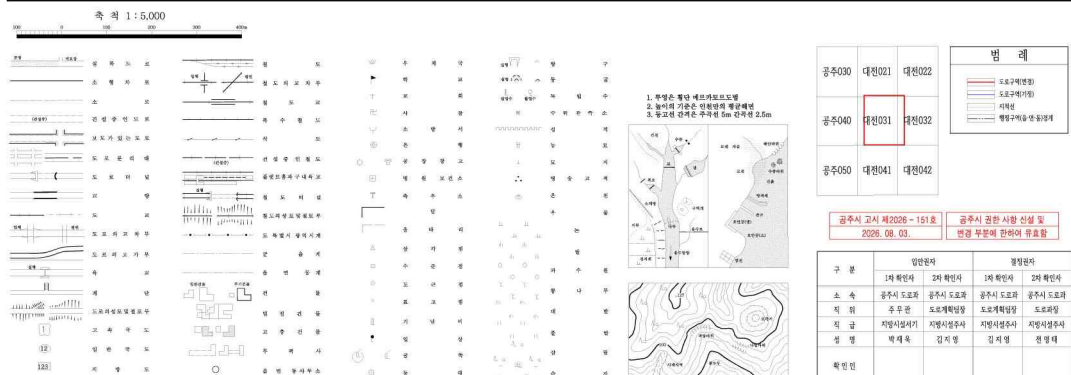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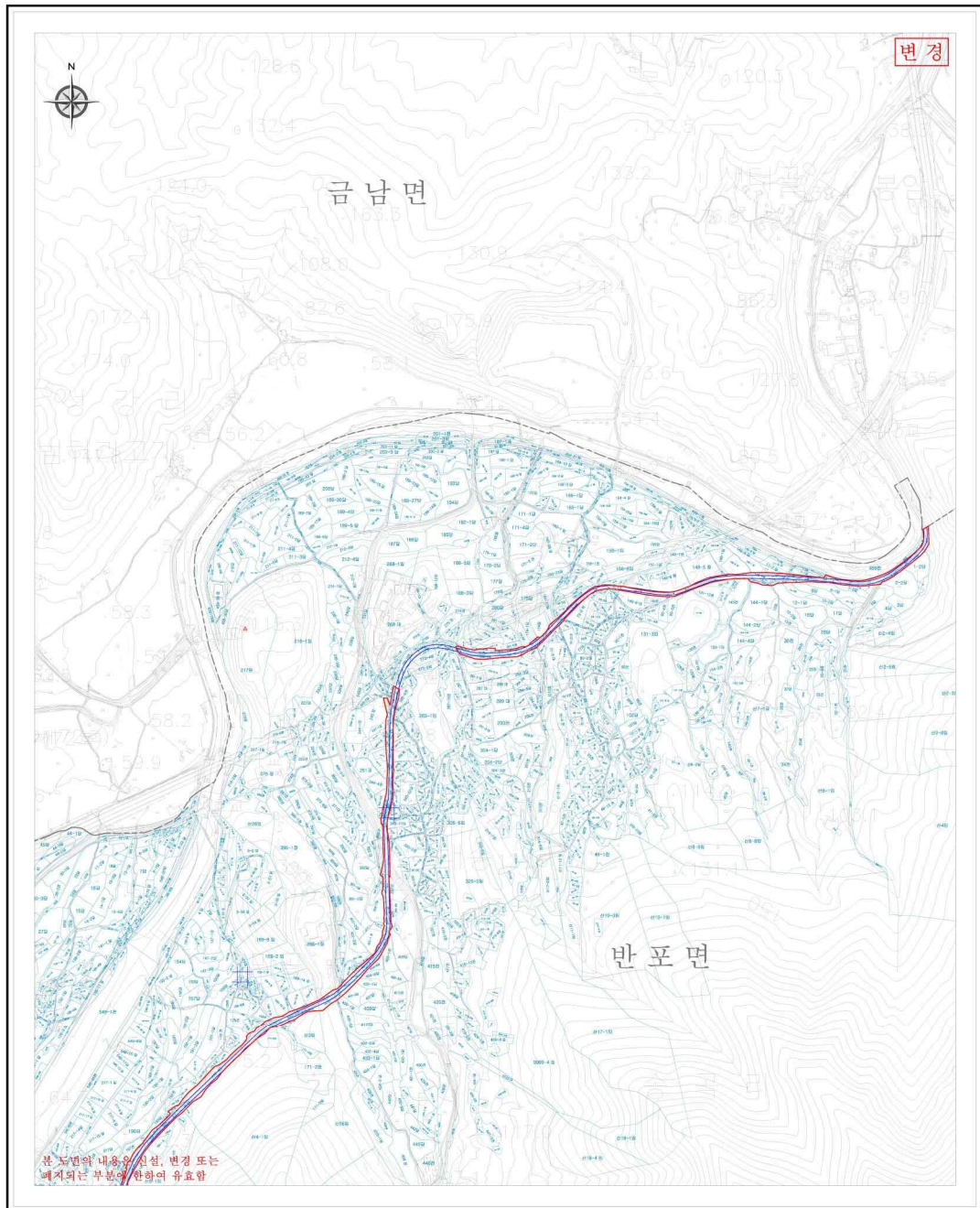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_시도2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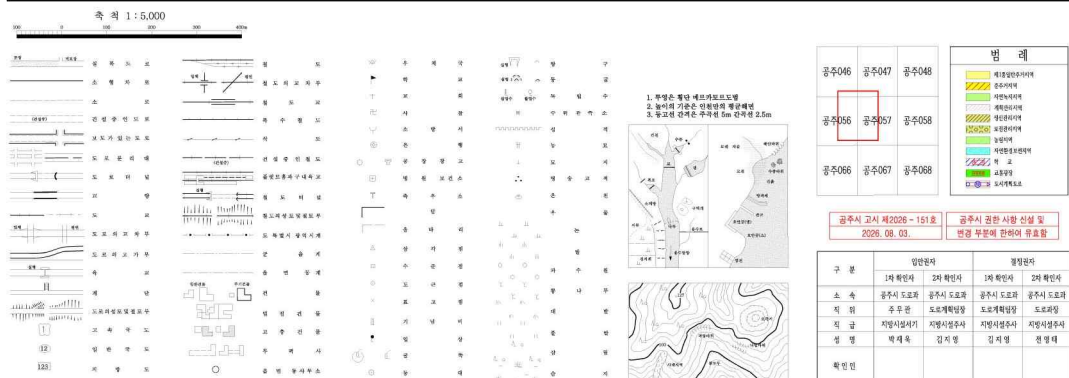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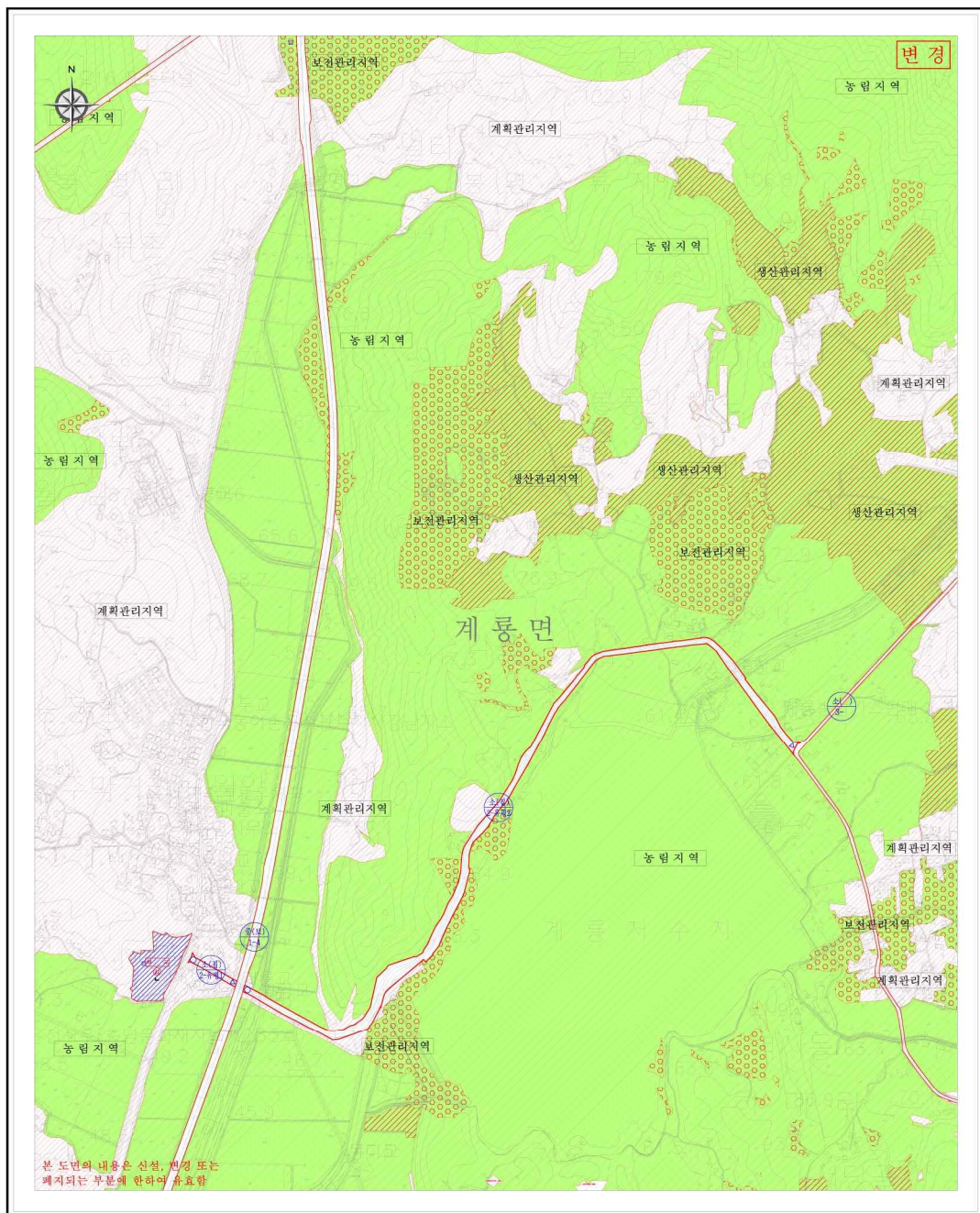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_시도2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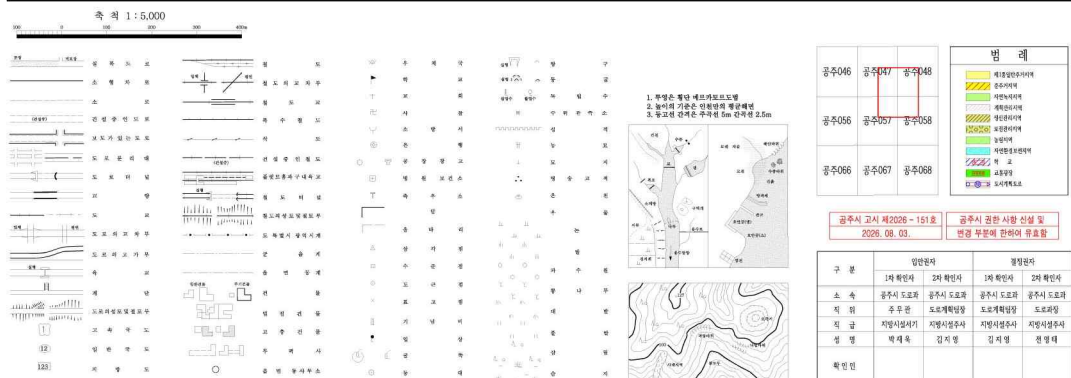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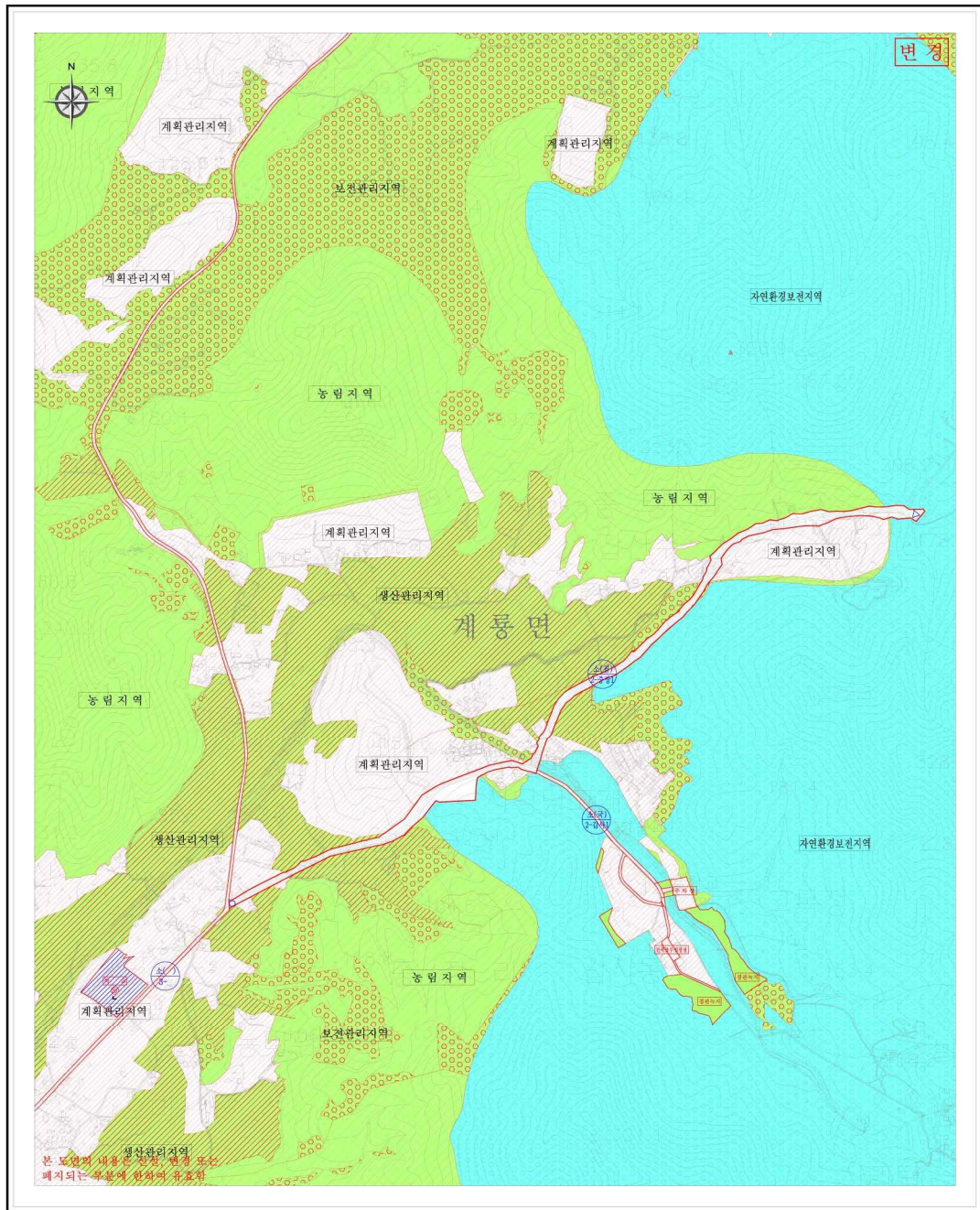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지도 _시도2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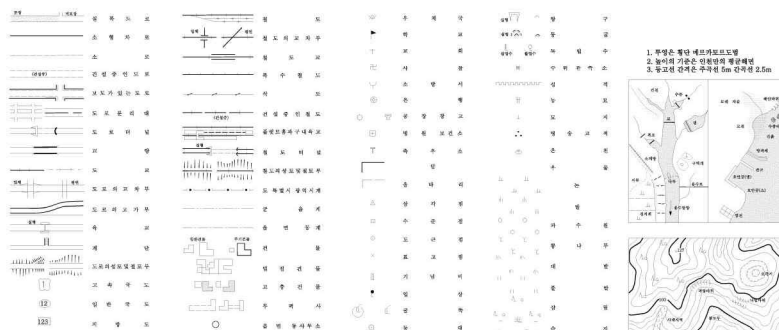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호(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호(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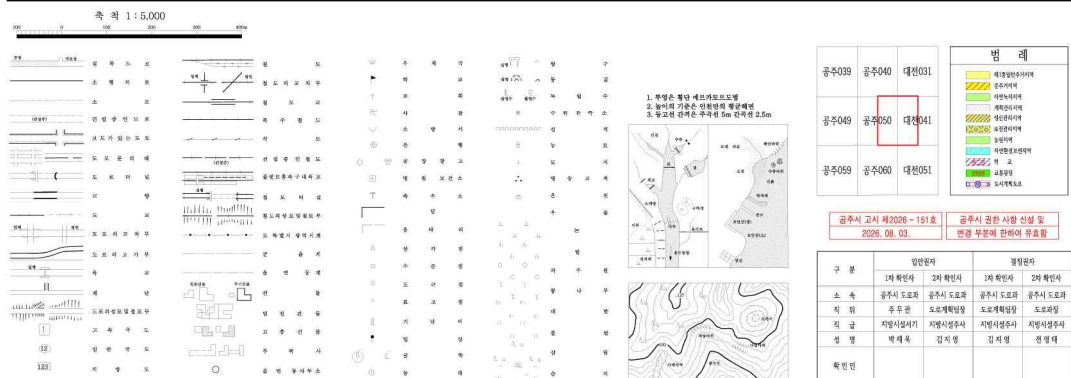
공주039	공주040	대전031
공주049	공주050	대전041
공주059	공주060	대전051

	대전광역시지역
	충주시지역
	청양군지역
	제천시지역
	보은군지역
	보령시지역
	강원도영월지역
	학교
	표준경계
	도시계획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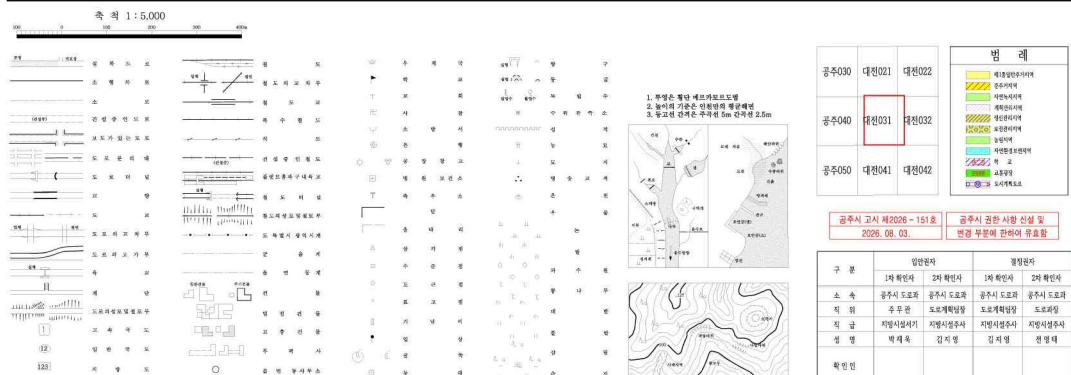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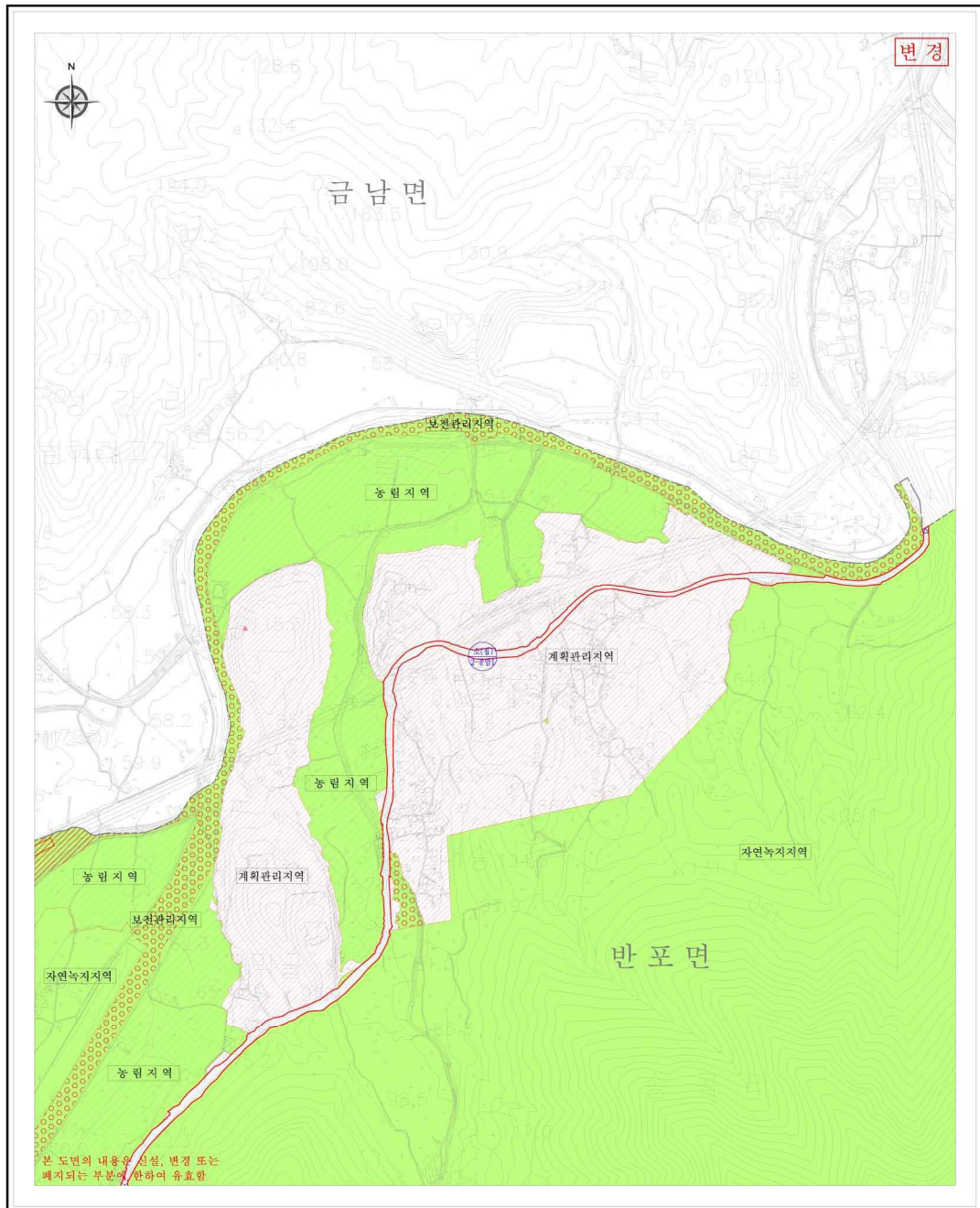
공주시 고시 제2026 - 151호 2026. 08. 03.	공주시 권한 사항 신설 및 변경 부분에 관하여 유효함
--------------------------------------	----------------------------------

구분	임원관자		정장관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공주시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직위	주무관	도로계획담당	도로계획담당	도로과장
직급	지정사설사기	지정사설사	지정사설사	지정사설사
성명	박재욱	김지영	김지영	전영태
확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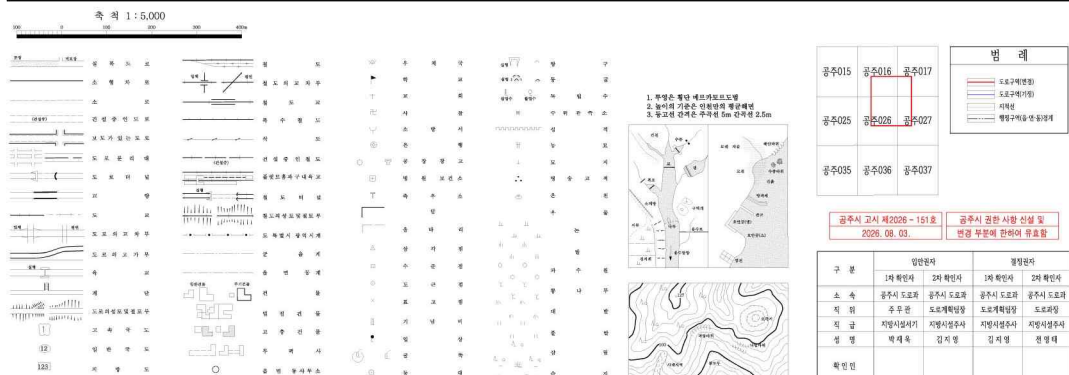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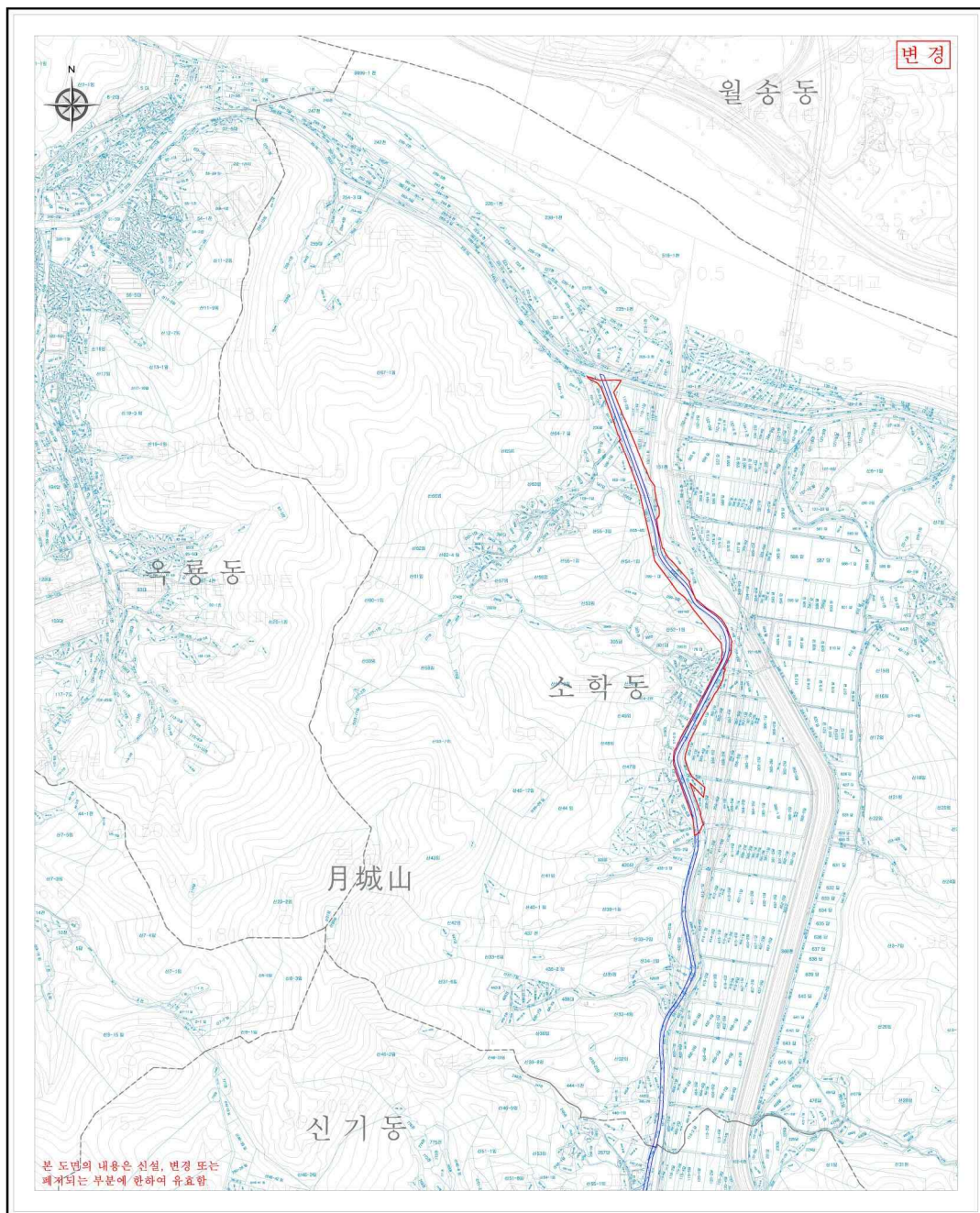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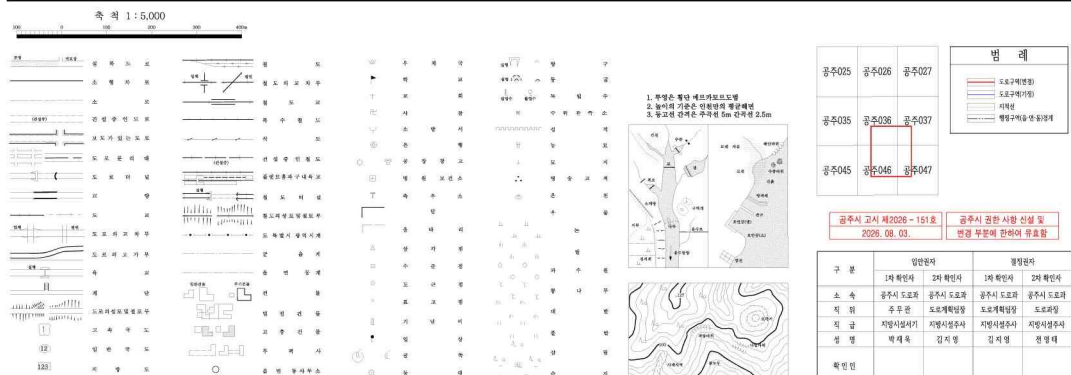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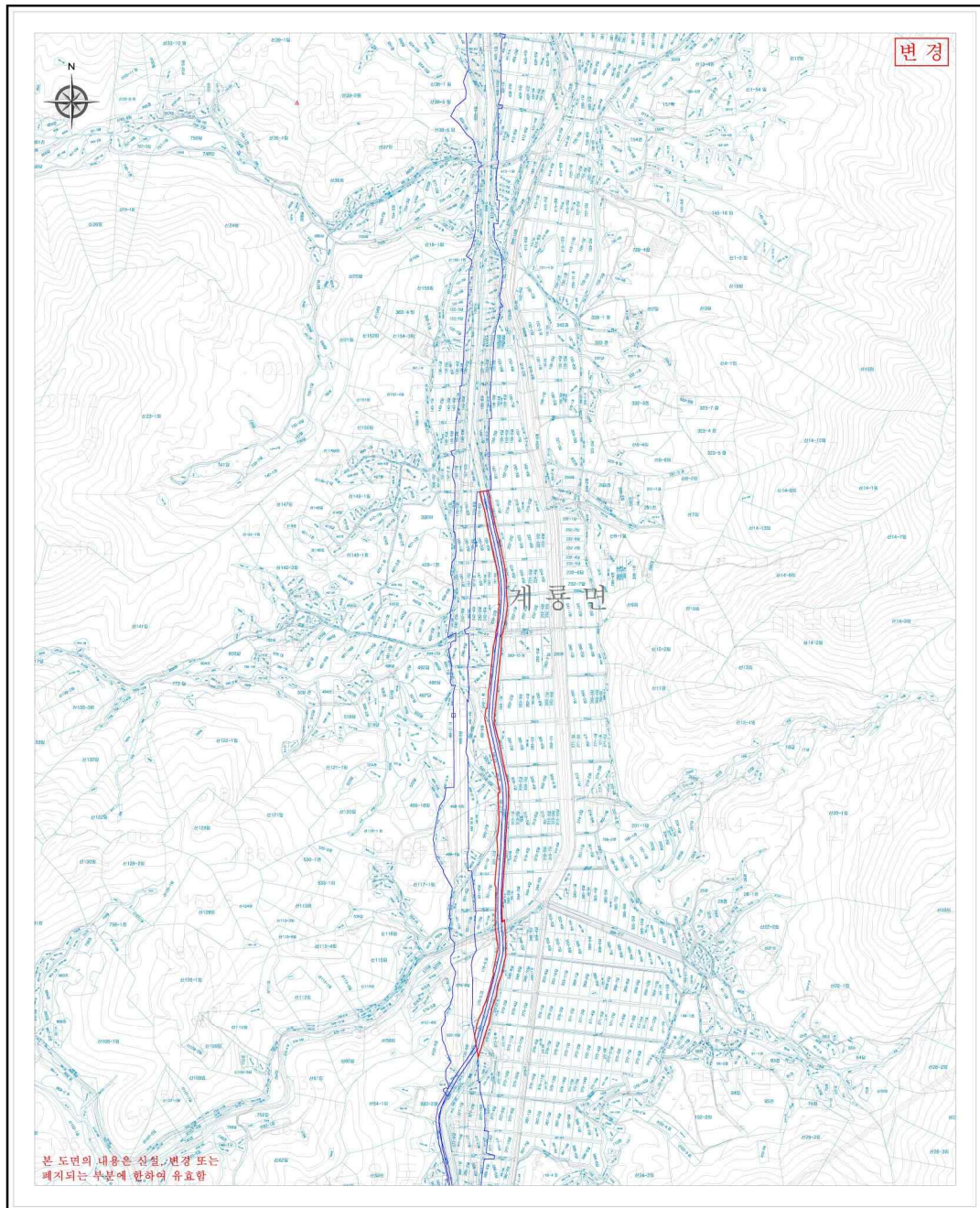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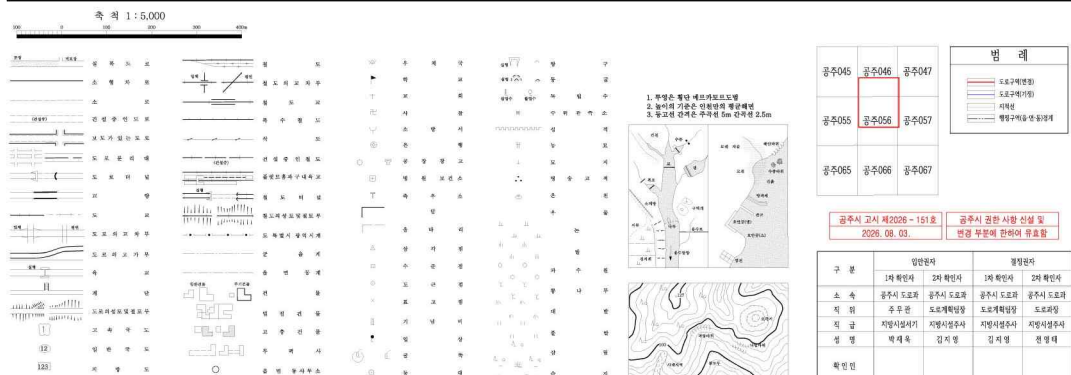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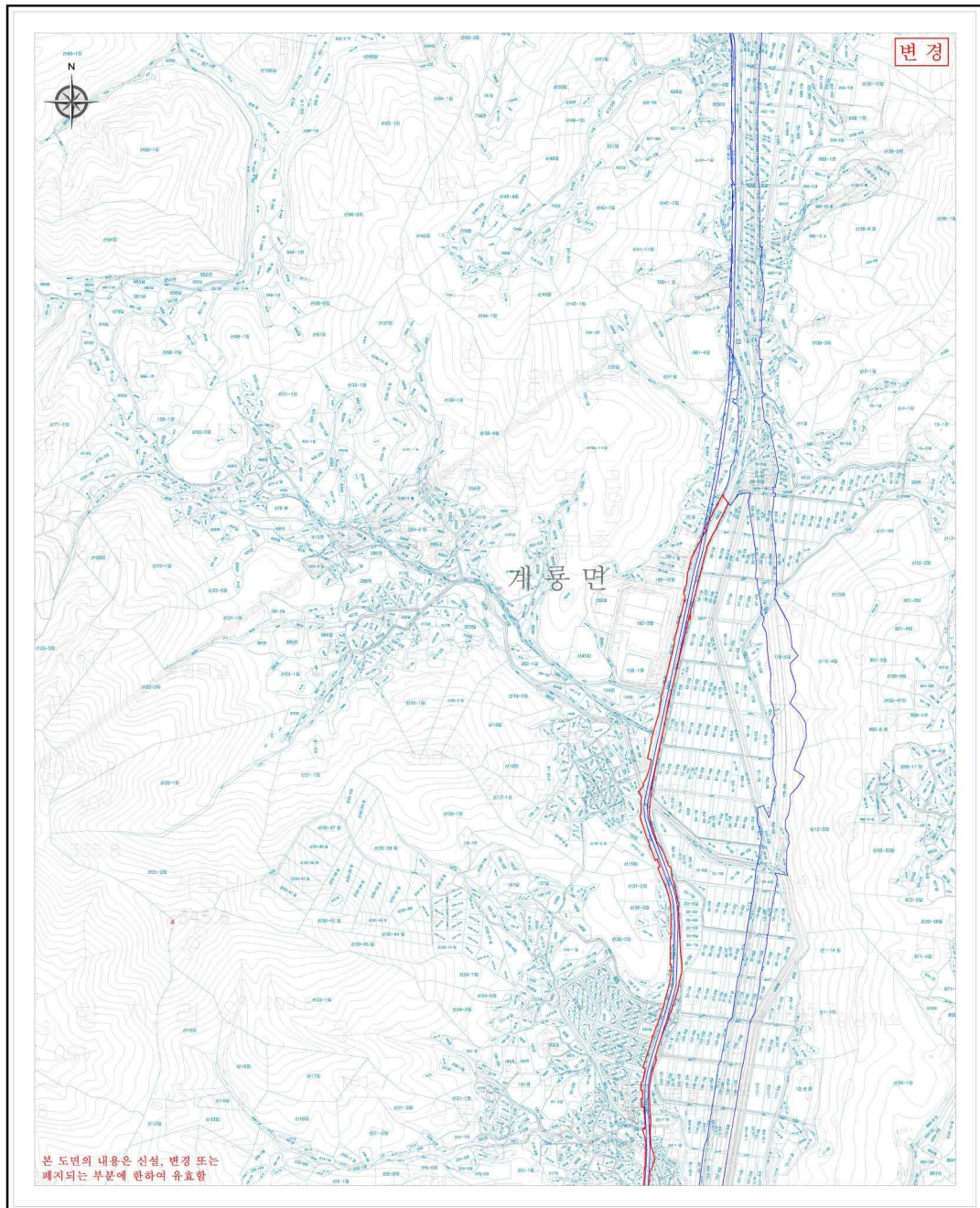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_ 시도21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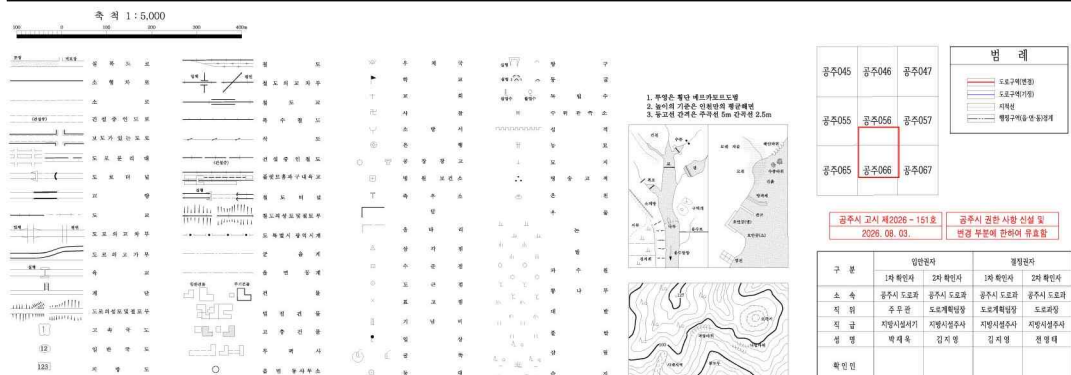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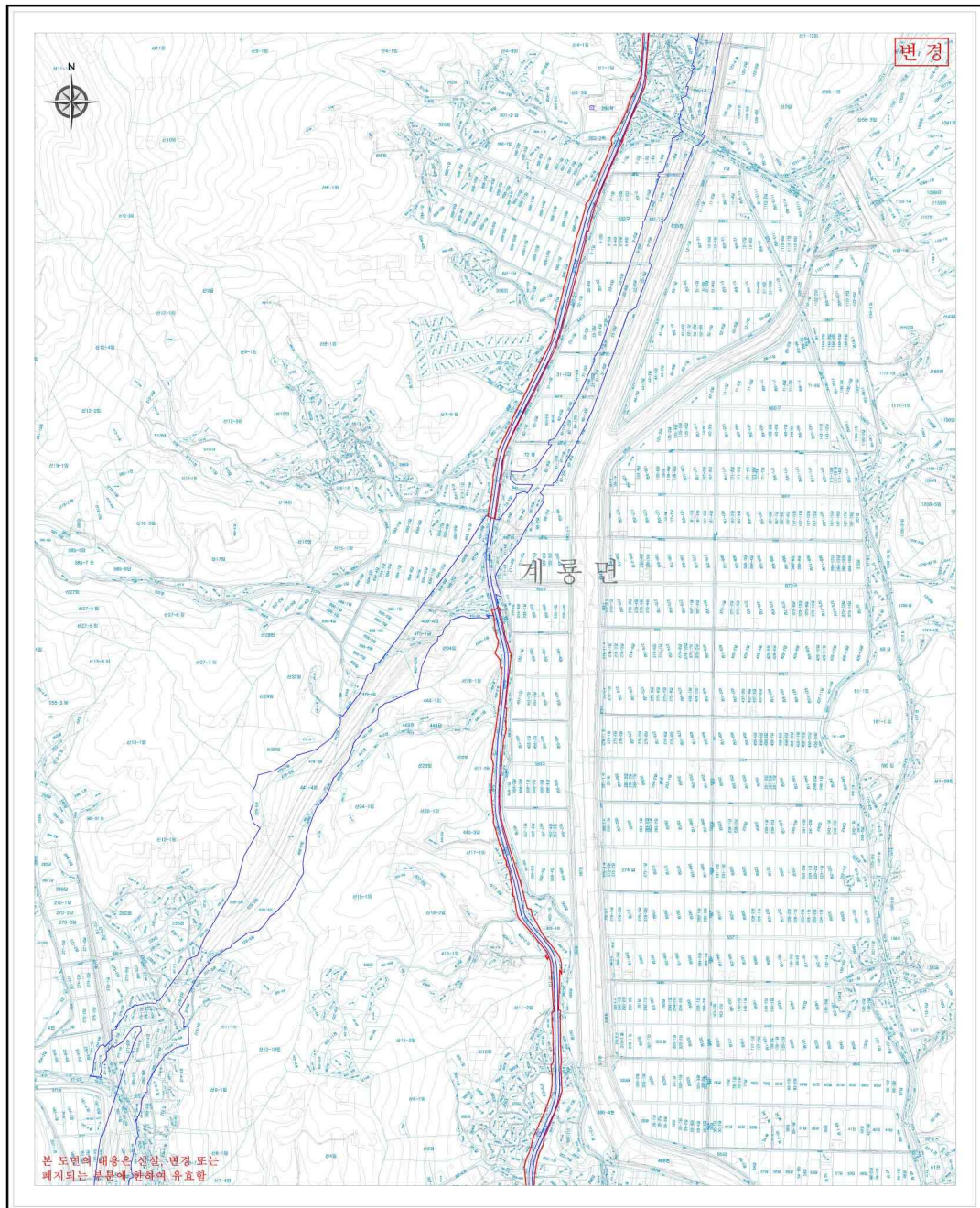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지도 _시도21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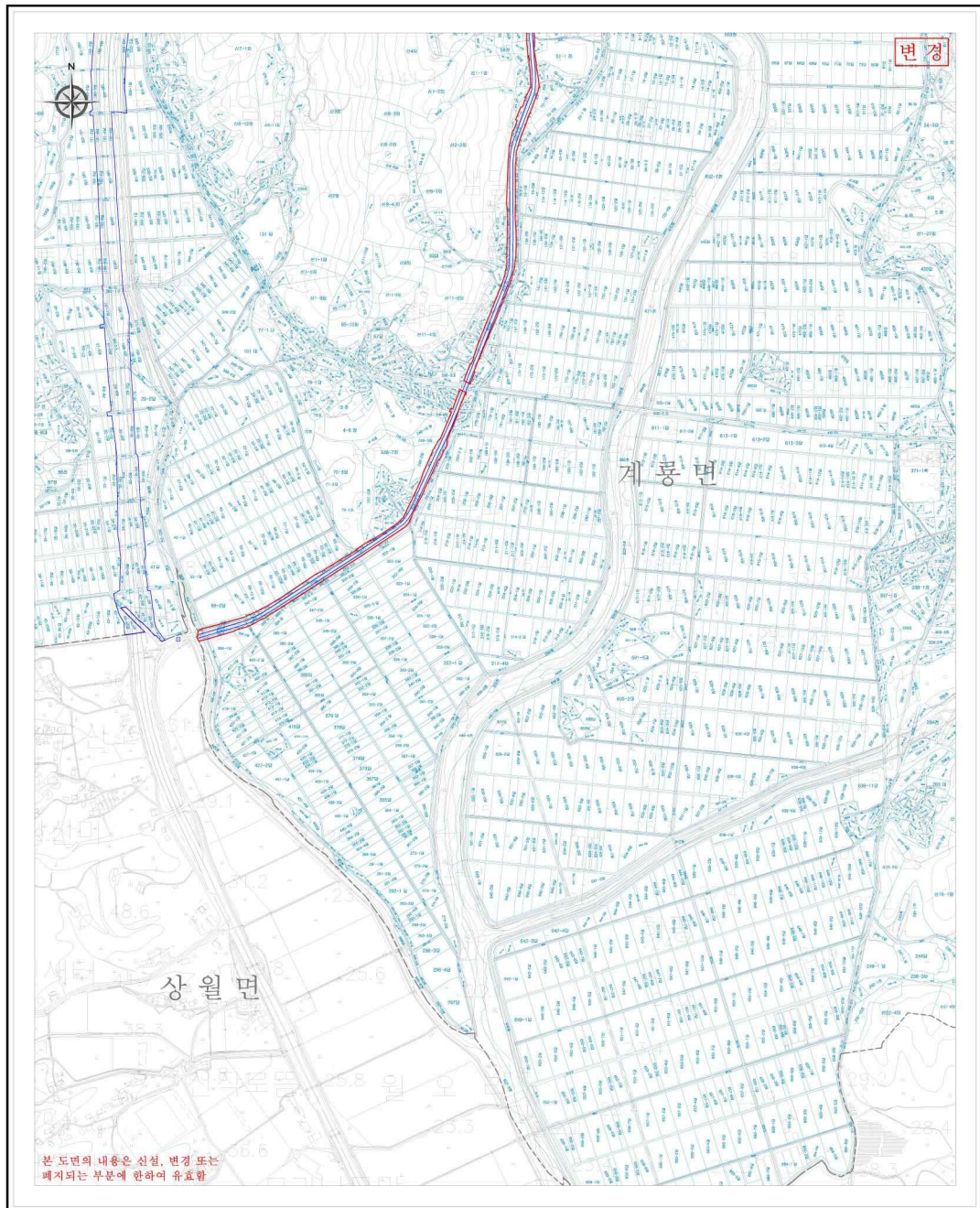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지도 _시도21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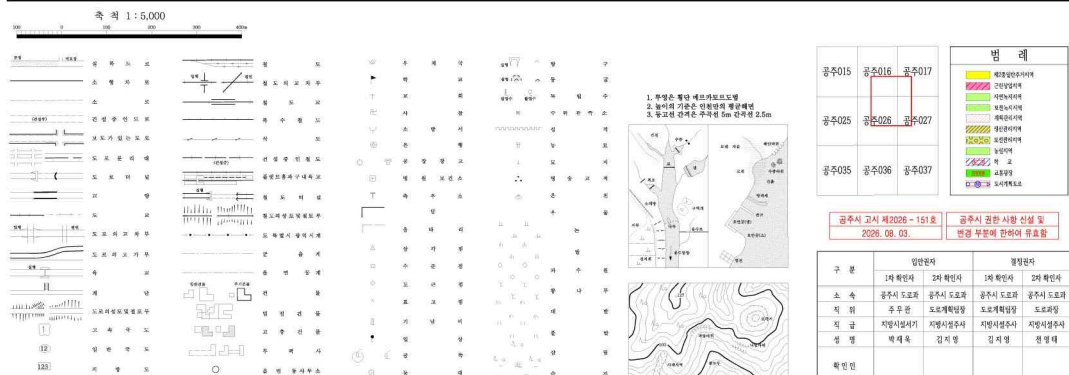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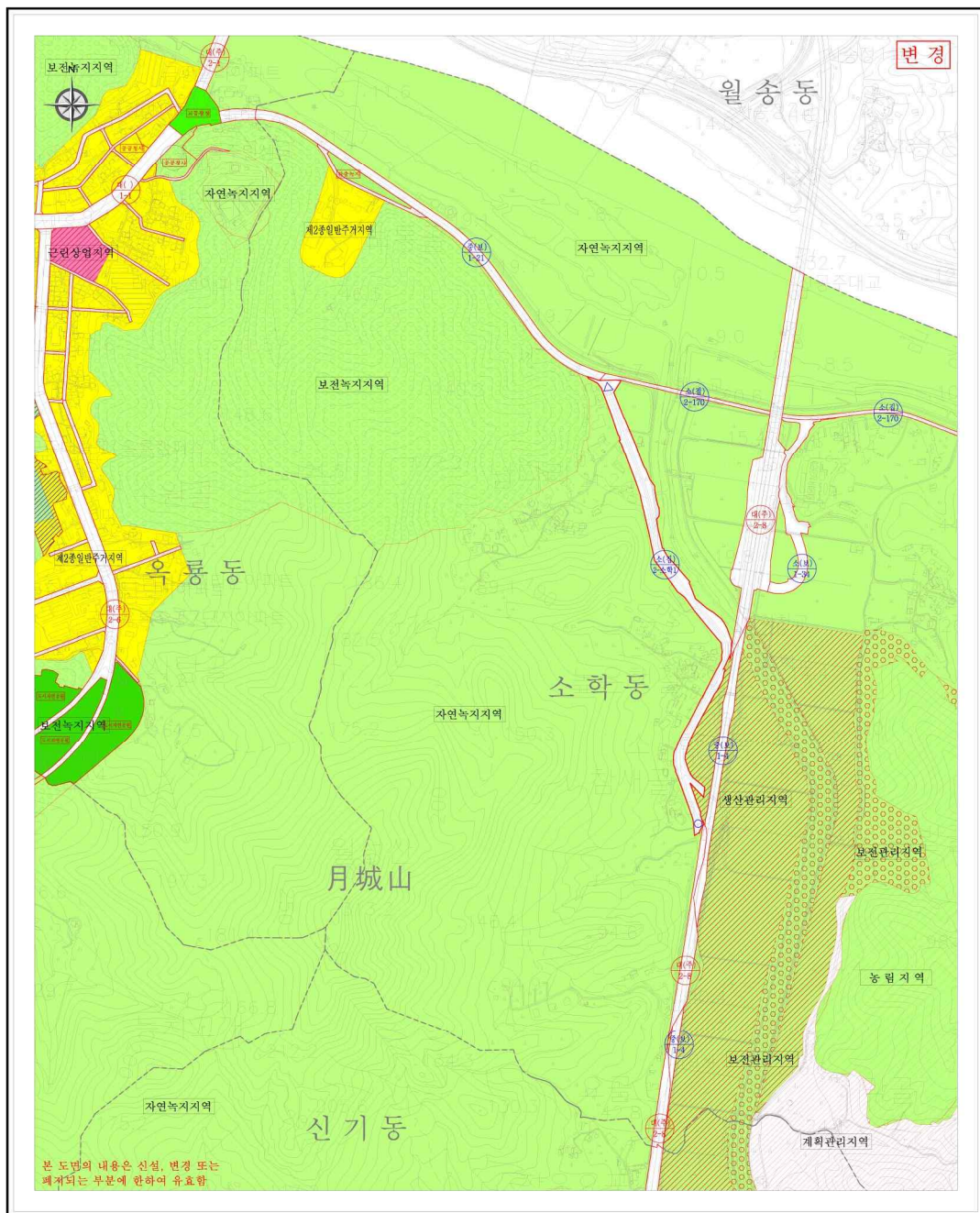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지도_시도21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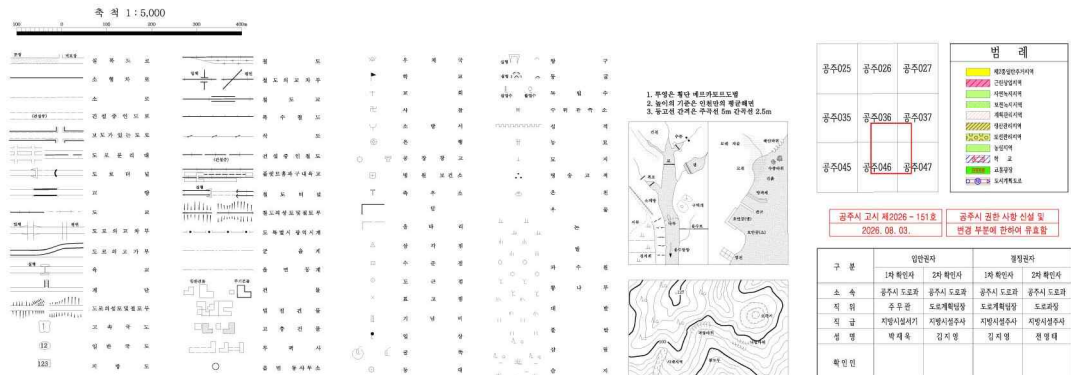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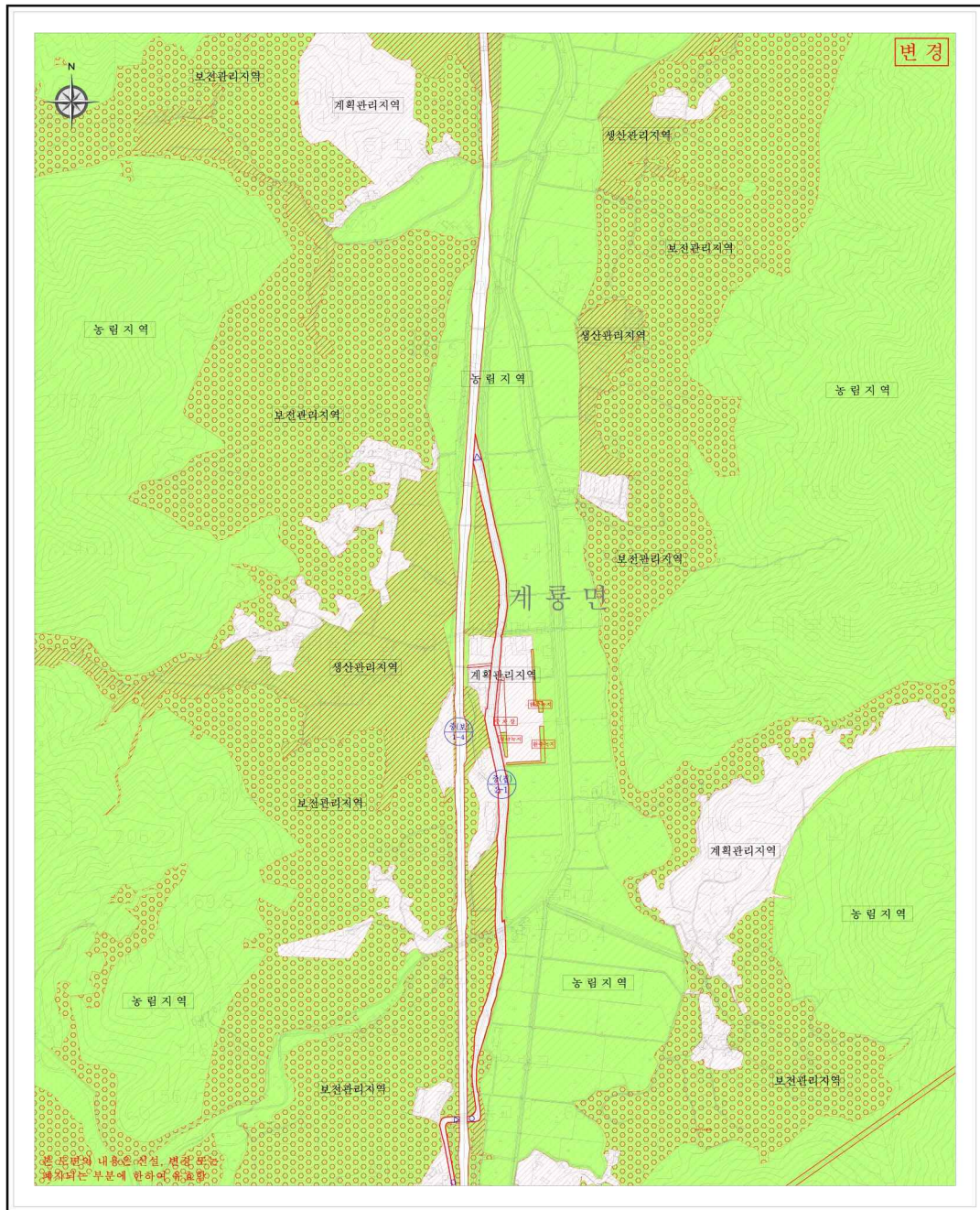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지도 _시도21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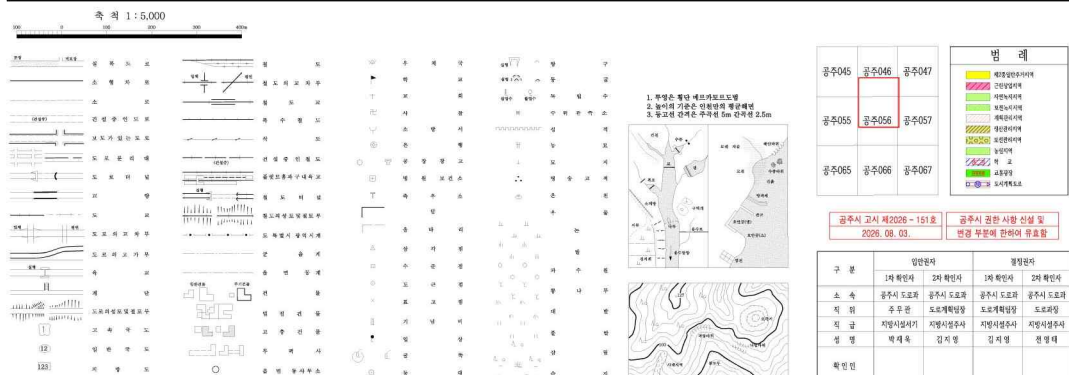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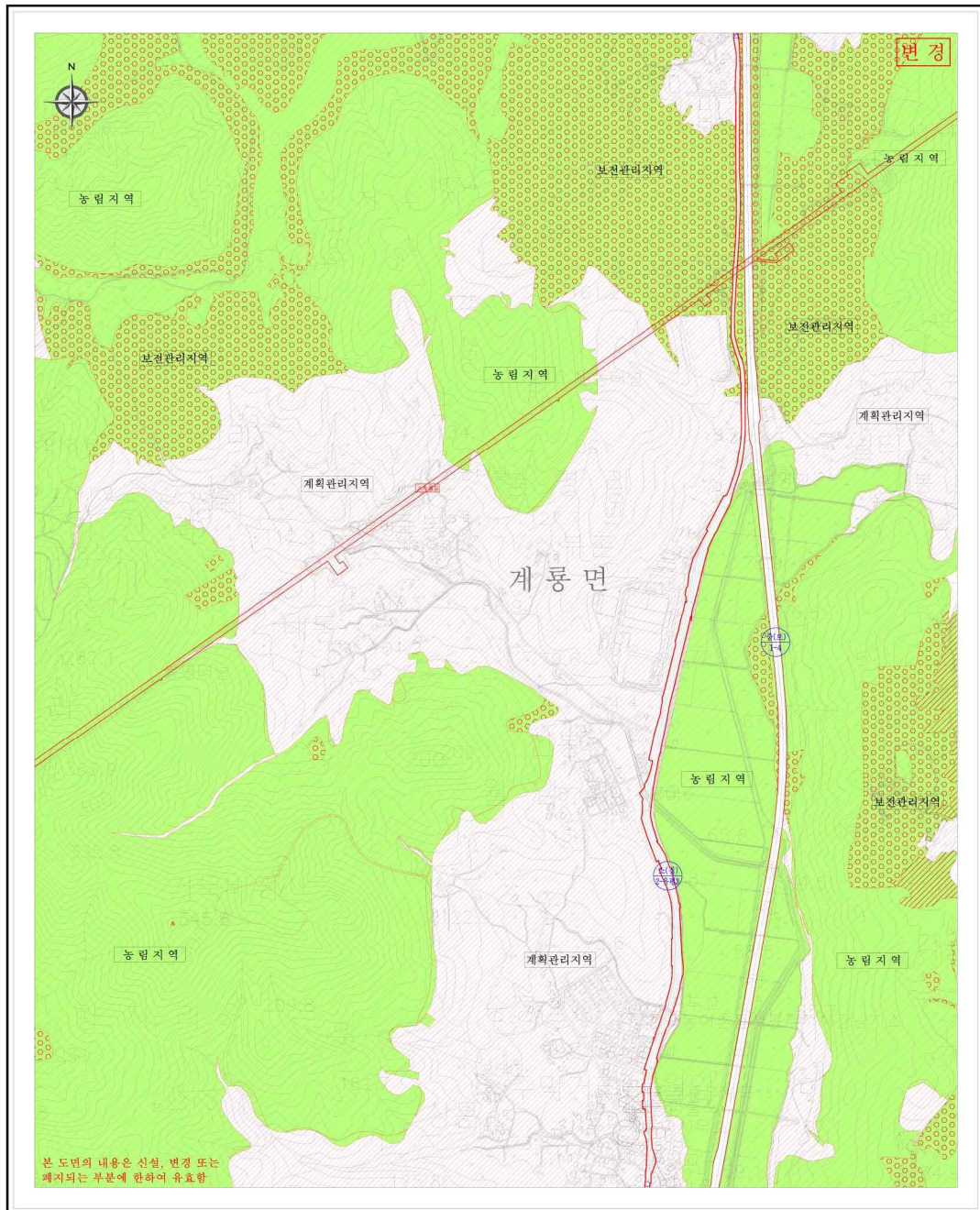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1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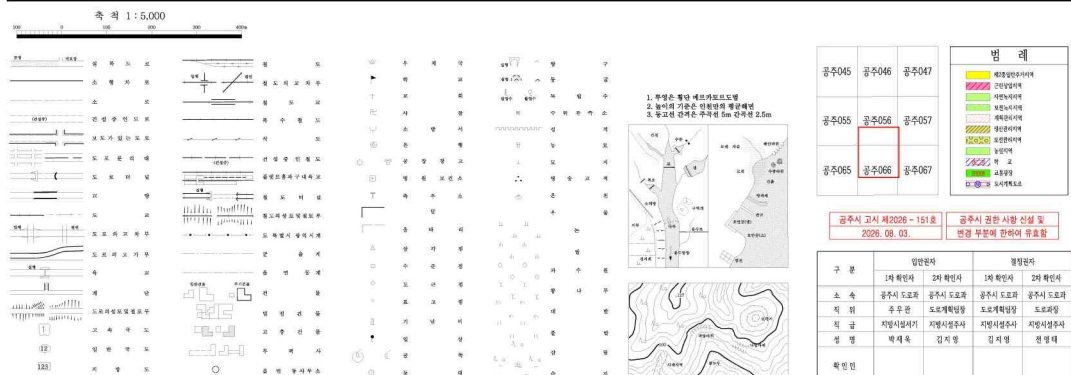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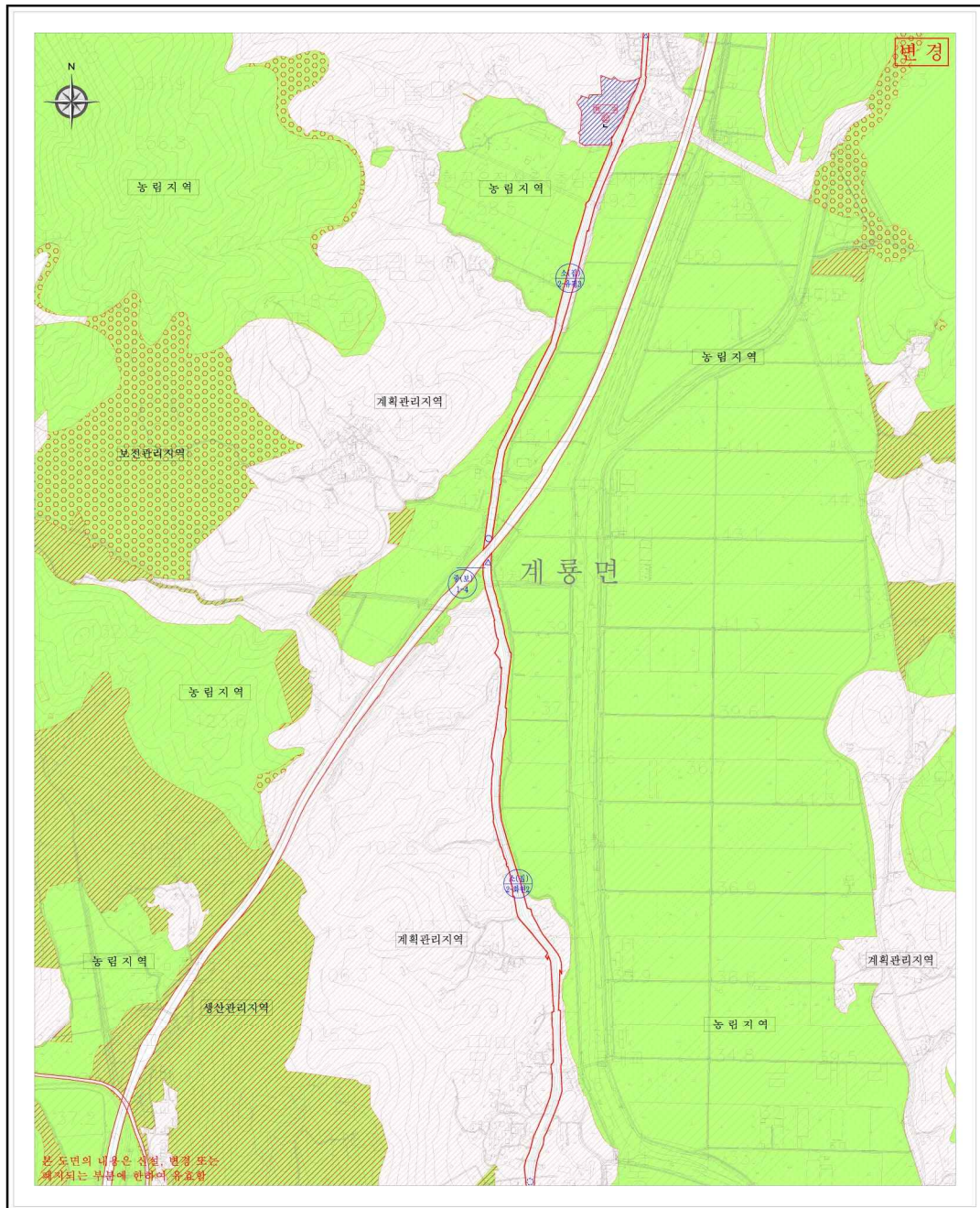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1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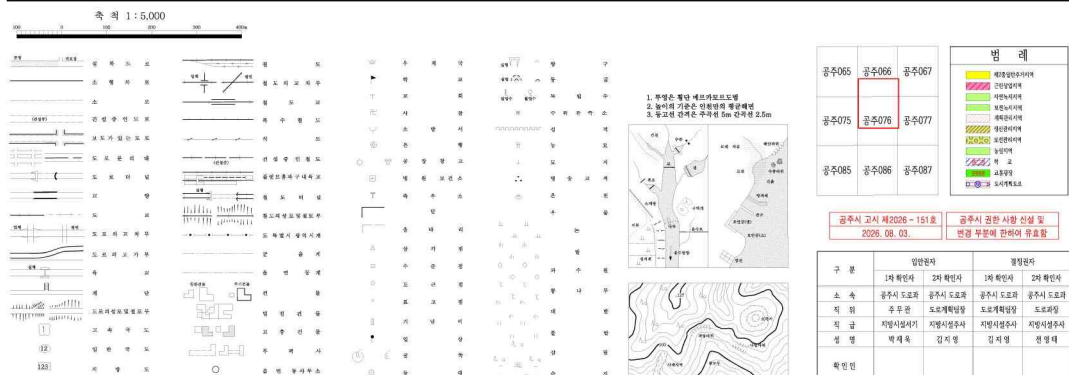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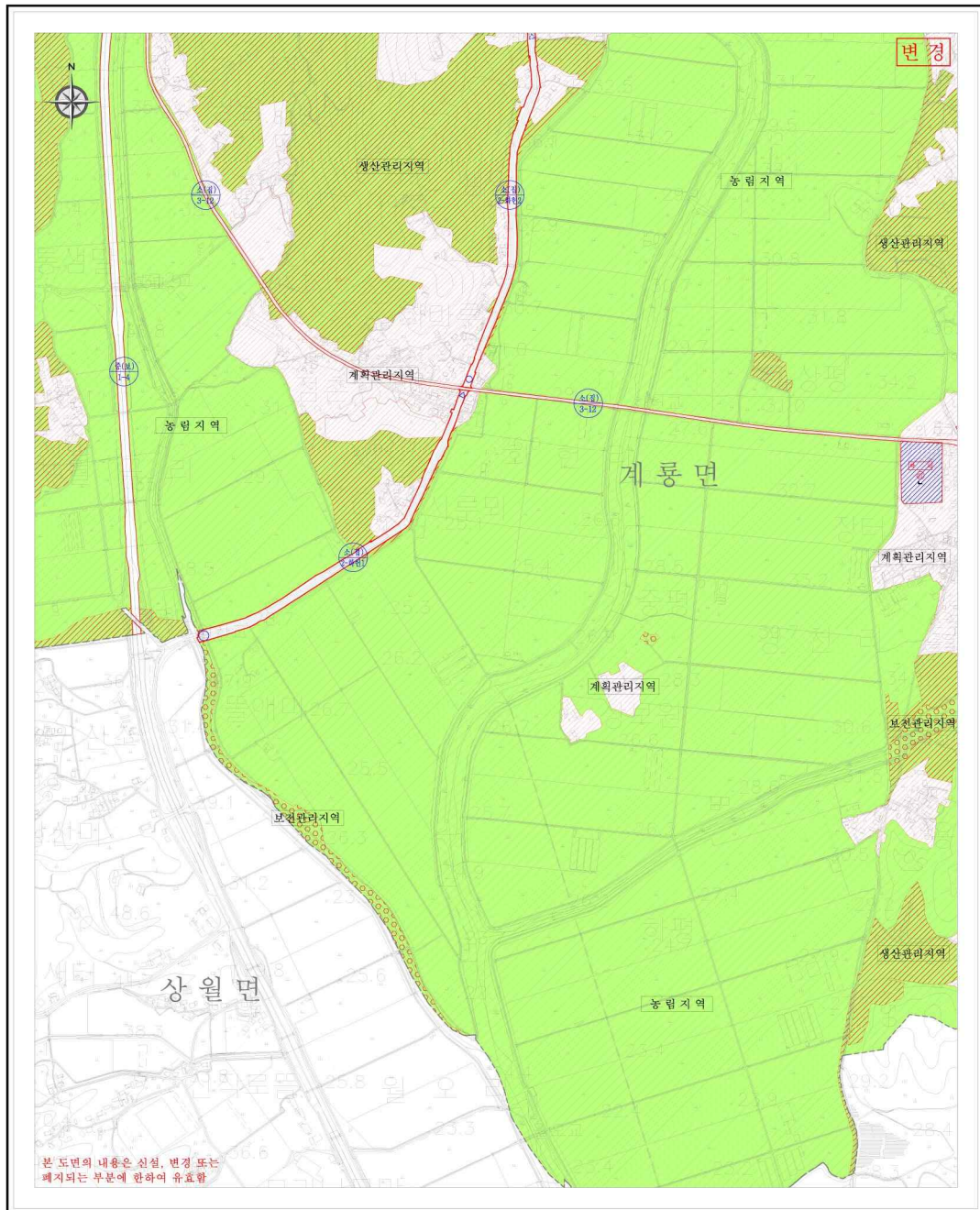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1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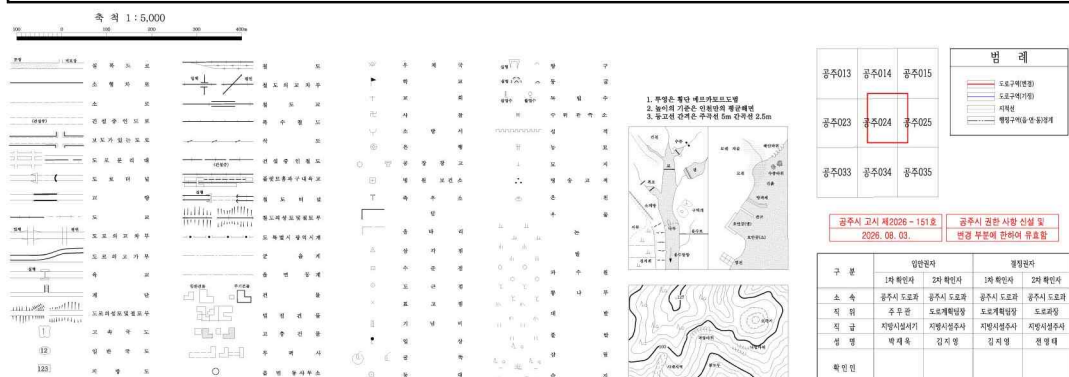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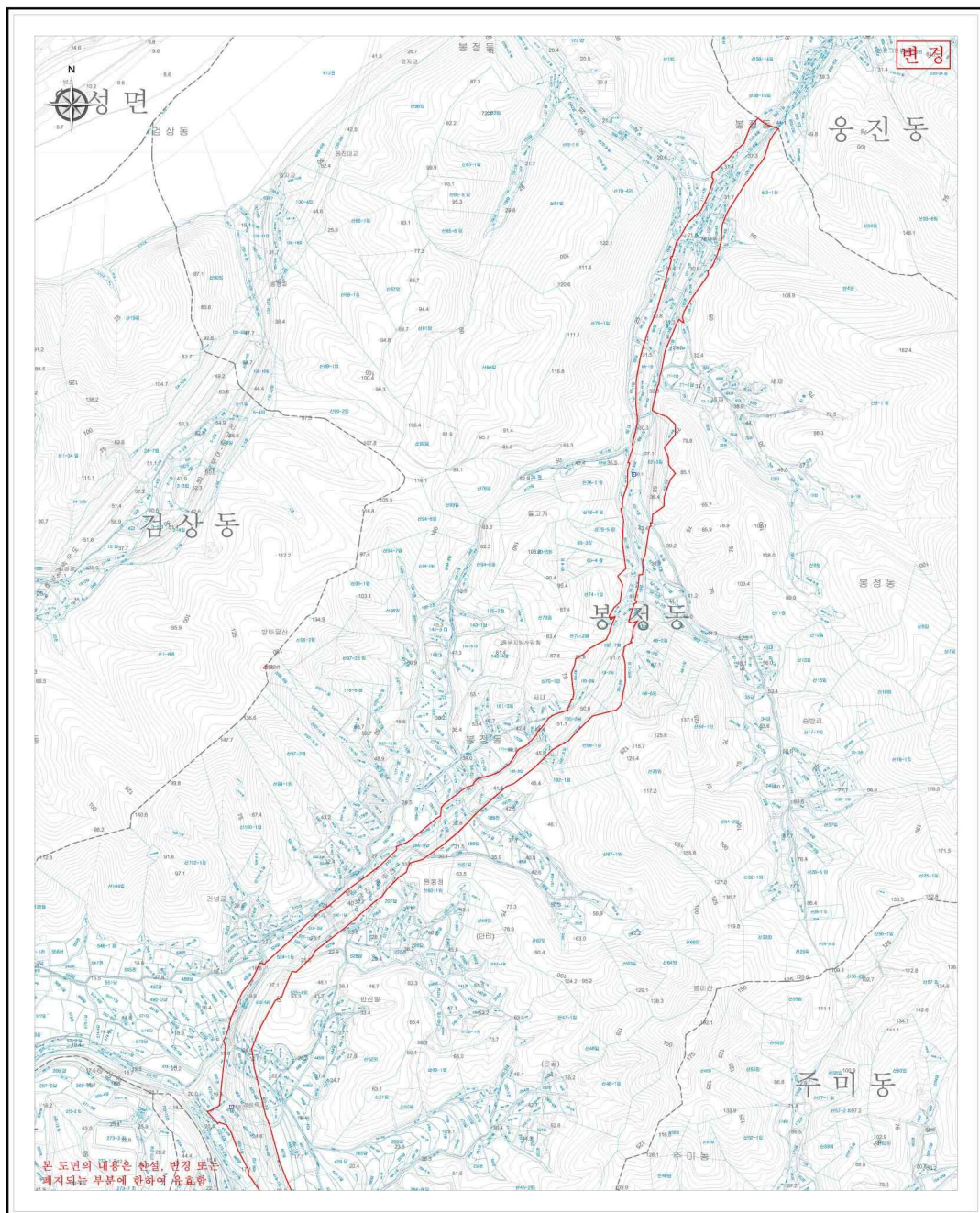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1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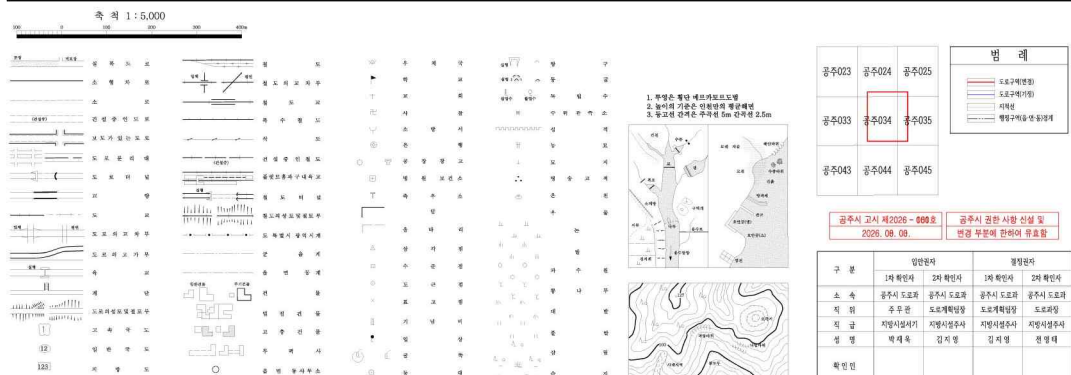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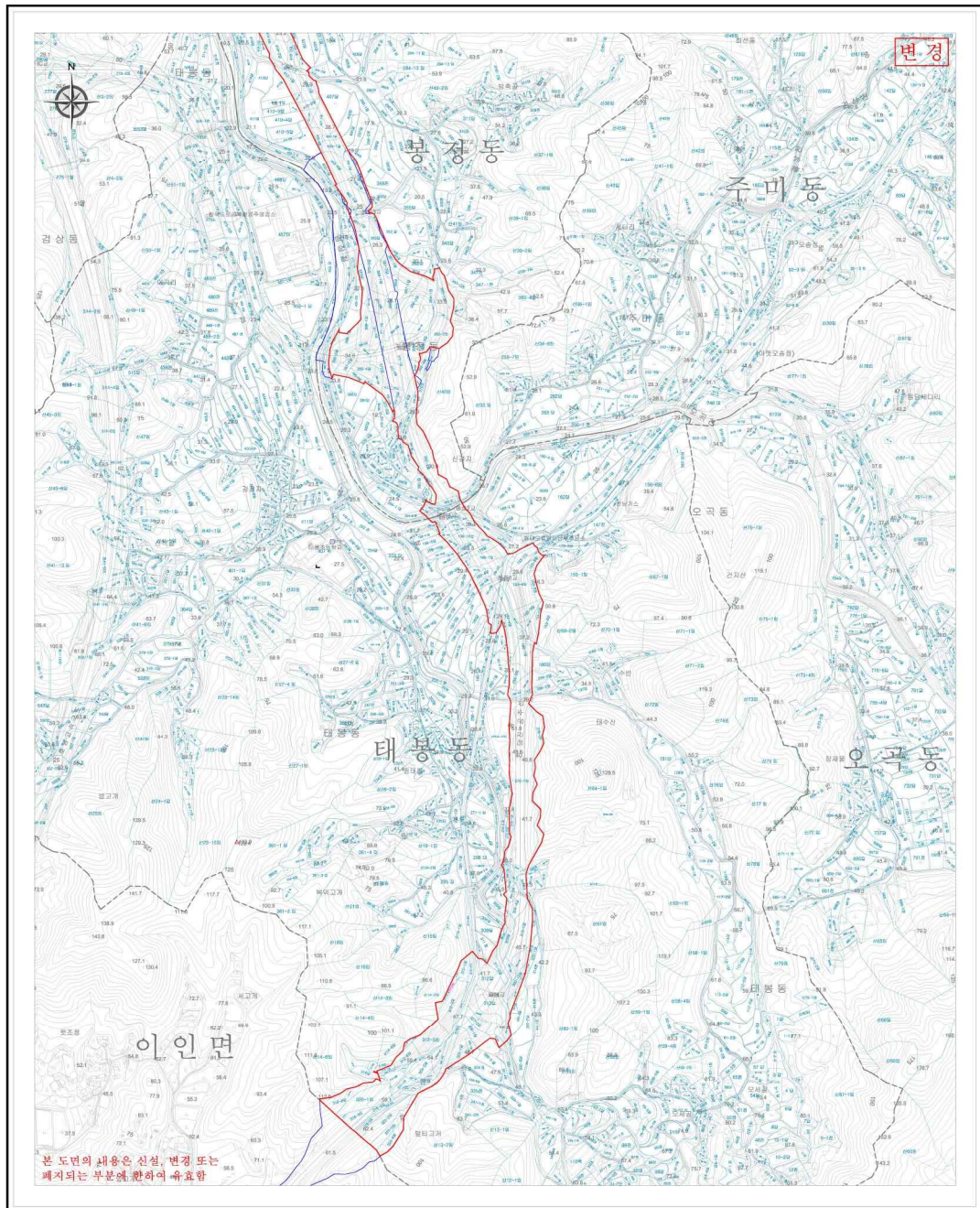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시도21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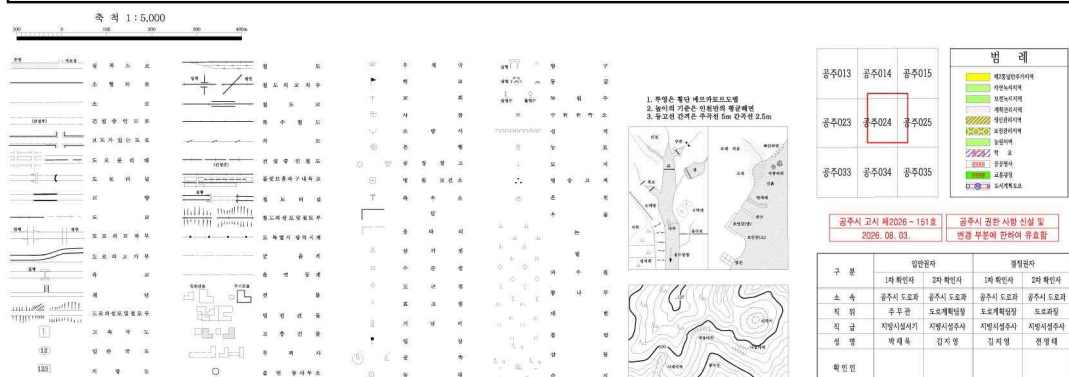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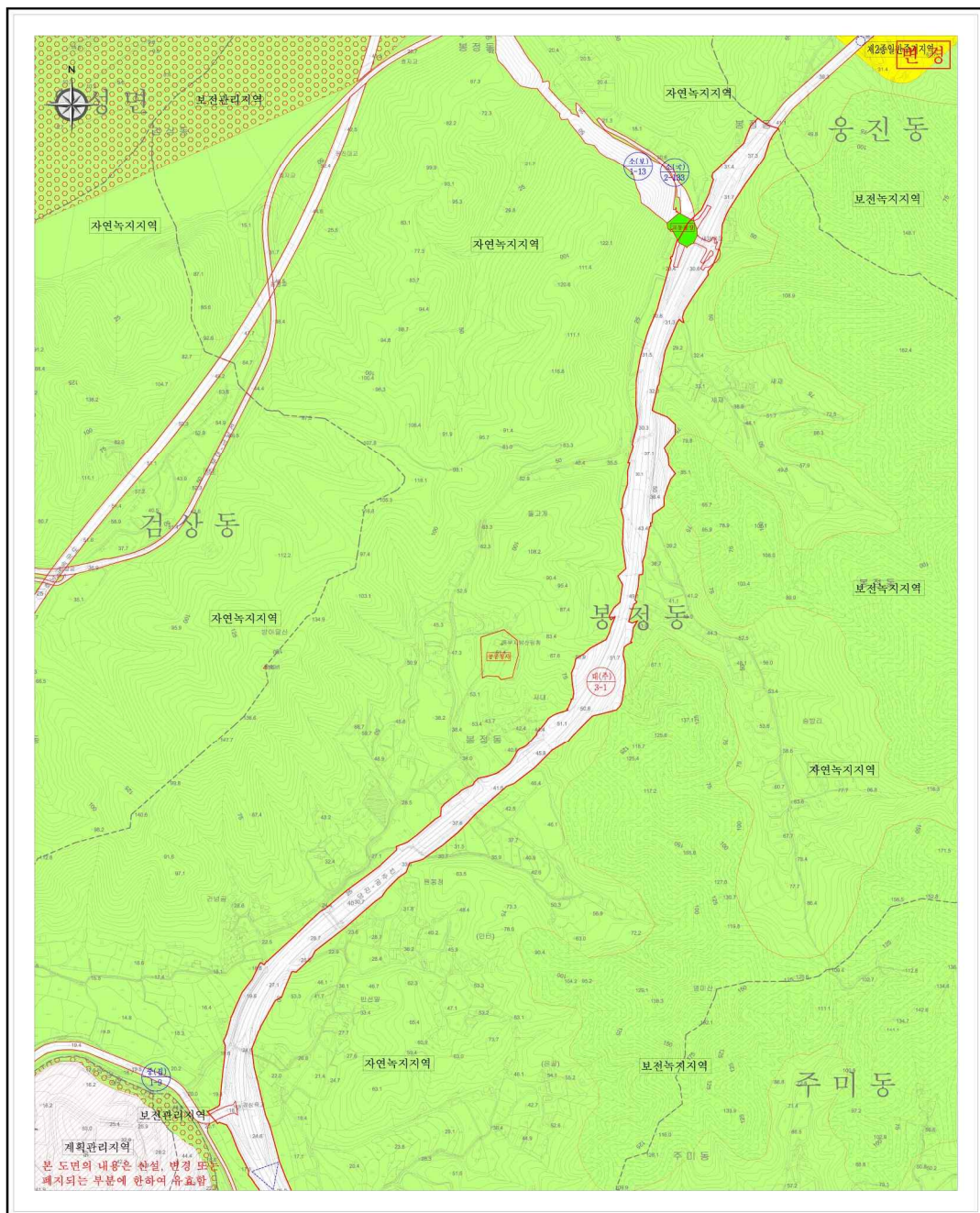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_국도40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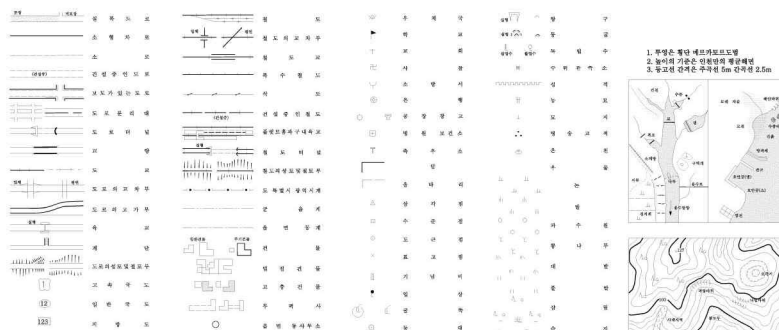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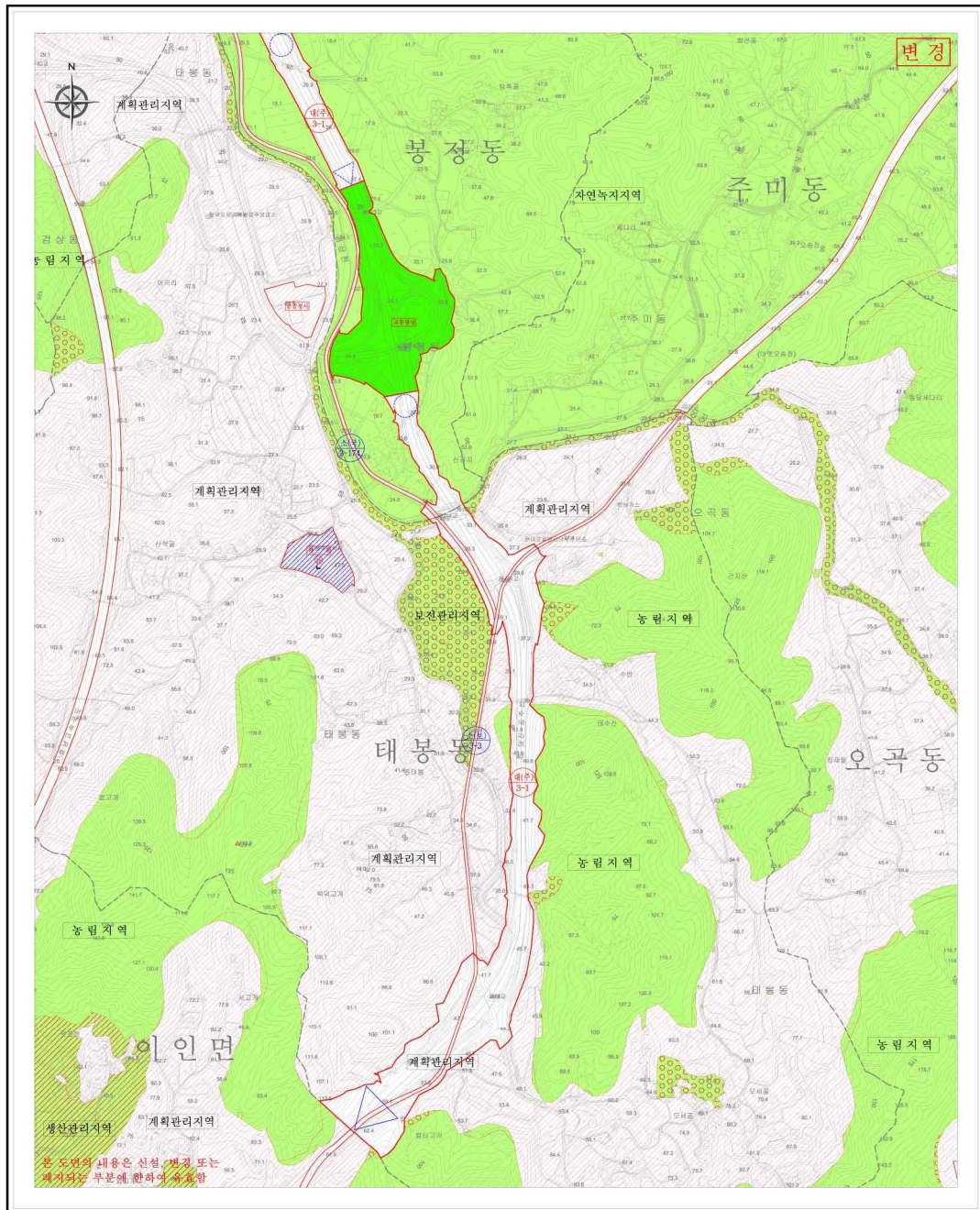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고지도_국도40호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국도40호(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_국도40호(2)



공주시 고시 제2026 - 151호 2026. 08. 03.	공주시 권한 사항 신설 및 변경 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	----------------------------------

구분	임원인사		정장인사	
	1차 확인인사	2차 확인인사	1차 확인인사	2차 확인인사
소속	공주시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공주시 도로과
직위	주무관	도로계획담당	도로계획담당	도로계획담당
직급	지방이사설기	지방이사설수사	지방이사설수사	지방이사설수사
성명	박태록	김지영	김지영	권영태
확인인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공주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공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8. 3.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주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공주대학교)
- 명 칭 :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학생복지관, 헌혈의 집 개축 및 증축공사 실시계획

3. 사업 내용

- 건축개요

구분	내용	
	기정	변경
사업명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실습관 개축 및 학생복지관 증축, 헌혈의 집 대수선 및 증축	
대지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2-3번지 일원	
대지면적	359,542㎡(캠퍼스전체)	359,542㎡(캠퍼스전체) (금회 사업부지 : 1,221.99㎡)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구분	캠퍼스전체	금회 사업 (도자문화실습관, 학생복지관, 헌혈의 집)
건축면적	64,102.15㎡	64,107.09㎡
건폐율	17.83% (법정20%이하)	17.83% (법정20%이하)
용적률	66.46% (법정80%이하)	69.13% (법정80%이하)
건축규모	-	-
구조	-	-

○ 건축세부내역

1) 도자문화실습관(건물번호 74) : 개축

◦ 주얼리디자인 실습관 축소

번호	명칭		층수		면적(㎡)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6	56	주얼리 디자인 실기관	주얼리 디자인 실기관	1F	1F	513.30	315.30	강의실습실	면적축소
				소계	소계	513.30	315.30		

◦ 도자문화 실습관 신설

번호	명칭		층수		면적(㎡)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74	-	도자문화 실습관	-	1F	-	198.00	-	신설
				소계	소계	-	198.00		

2) 학생복지관(건물번호 17) : 증축

번호	명칭		층수		면적(㎡)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7	17	글로벌 인재관	학생 복지관	지하	지하	288.00	309.28	기계실	글로벌 인재관 철 거 및 학생복지관 증축
				1F	1F	702.00	1,648.78	행정실	
				2F	2F	540.00	1,665.62	고시원	
				3F	3F	240.48	1,665.62	학생회실	
				-	4F	-	1,210.70	-	
				소계	소계	1,770.48	6,500.00		
18	18	학생 복지관	-	1F	1F	996.20	-	식당	학생 복지관 철거
				2F	2F	666.00	-	동아리실	
				3F	3F	666.00	-	"	
				소계	소계	2,328.20	-		

3) 헌혈의 집(건물번호 22) : 대수선 및 증축

번호	명칭		층수		면적(㎡)		용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2	22	헌혈의집	헌혈의집	1F	1F	116.91	139.76	체혈실	1층 증축 (옥외계단)
				2F	2F	131.09	131.09	행정실	
				소계	소계	248.00	270.8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립공주대학교총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8년 01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명세서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366,818	359,542			
1	공주시 신관동	43	도	6,376	162	공주시		
2	공주시 신관동	51	답	2,147	2,147	국(교육부)		
3	공주시 신관동	46-4	대	254	254	국(교육부)		
4	공주시 신관동	46-5	대	92	92	국(교육부)		
5	공주시 신관동	43-15	잡	8	8	국(교육부)		
6	공주시 신관동	43-16	잡	256	256	국(교육부)		
7	공주시 신관동	171-18	학	19	19	국(교육부)		
8	공주시 신관동	177-10	도	25	25	공주시		
9	공주시 신관동	182	학	354,253	353,229	국(교육부)		
10	공주시 신관동	242-1	임	233	233	국(교육부)		
11	공주시 신관동	545	구	736	736	국(농림축산식품부)		
12	공주시 신관동	545-9	학	134	134	국(교육부)		
13	공주시 신관동	546-2	학	59	59	국(교육부)		
14	공주시 신관동	166-4	도	71	33	국(교육부)		
15	공주시 신관동	52-3	답	2,155	2,155	국(교육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참 고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